

관세법상 가산세제도와 벌칙조항의 합리적인 운용방향

2021. 9

정재호 · 노영예 · 이재선

관세법상 가산세제도와 벌칙조항의 합리적인 운용방향

2021. 9

정재호 · 노영예 · 이재선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정 재 호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노 영 예 선임연구원

이 재 선 특수전문직 3급

목 차

I. 서론	7
II. 가산세 및 벌칙제도 일반	10
1. 가산세 및 벌칙제도 개요	10
가. 가산세 및 벌칙의 개념	10
나. 가산세 및 벌칙의 법적 성격	12
다. 가산세 및 벌칙의 목적 및 기능	16
라. 가산세 및 벌칙의 관계	18
2. 우리나라의 가산세 및 벌칙제도	23
가. 가산세제도	23
나. 벌칙제도	28
III. 주요국의 가산세 및 벌칙제도	35
1. 일본	35
가. 가산세제도	35
나. 벌칙제도	43
2. 호주	46
가. 가산세제도	46
나. 벌칙제도	47
3. 미국	50
가. 정산	50

나. 민사적 제재	57
다. 벌칙	61
4. 캐나다	65
가. 과태료	65
나. 벌칙	73
5. 독일	75
가. 가산세제도	75
나. 벌칙	78
6. 소결	83
IV. 개선방안 및 시사점	89
1. 자발적 시정 유도	89
가.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 유도	89
나. 수입세액정산제도의 적용 범위 검토	91
2. 제재의 차등화	93
가. 부당가산세와 관세형벌의 관계 정립	93
나. 가격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마련	99
3. 규정의 정비	102
가. 납부지연가산세의 용어 정비	102
나. 무신고가산세의 가중사유 정비	107
참고문헌	111

표 목차

〈표 Ⅲ-1〉 미국 「형법」상 경죄에 대한 벌금	62
〈표 Ⅲ-2〉 주요국의 가산세 및 벌칙(관세포탈죄)제도 비교	87

그림 목차

[그림 IV-1] 보정신청에 따른 납부고지서	104
--------------------------------	-----

I. 서론

-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¹⁾
 - 관세의 부과·징수를 통해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통관질서의 유지를 유지하여 국경·국민·국내산업을 보호함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 등 다양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요구함
 - 특히 관세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통하여 확정되므로 「관세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의 협력이 중요함
- 따라서 「관세법」은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협력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산세 부과, 벌칙에 따른 처벌과 같은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음
 - 불성실한 납세의무자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의무위반을 방지하고 그 위반으로 발생한 불법적 이익과 국가의 손해를 회수함
- 즉 가산세 및 벌칙제도는 과세행정의 편의, 징세비용의 절감 및 세수의 적기 확보를 위한 의무이행을 보장하는 수단임
 - 이 외에도 「관세법」은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강제징수, 과징금, 고액상습채납자 명단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가산세와 벌칙이 이러한 수단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함

1) 「관세법」 제1조

- 다만 과세행정의 편의란 과세당국뿐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징세비용의 절감 또한 납세의무자의 납세비용 절감을 포함하므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함²⁾
 - 납세의무이행을 위한 수단이 과도하게 진행되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행해지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경제활동을 제약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따라 가산세와 벌칙을 운용함에 있어 과세당국의 관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과세 필요성과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 및 경제활동 지원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
 - 과세당국은 국가재정을 확보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지만 또한 국민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그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를 지님³⁾
- 이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하며,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당국에 협조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의무위반행위에 비해 경미하거나 과도한 처벌이 가해진다면 해당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위반의 수준에 따라 적절한 제재가 적용되어야 함
 -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으로 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한다면 불성실한 납세의무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할 수 있음
 - 또한 가산세와 벌칙의 목적·의도와 다르게 해석되거나 적용될 수 있는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산세 및 벌칙제도가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를 조화롭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합리적 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제Ⅱ장에서는 가산세와 벌칙의 의의·목적·성격 및 두 제도의 관계와 우리나라의

2) 서정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협력의무 관련 가산세제도의 개선방안」, 『조세연구』, 제17권 제4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p. 98.

3) 서정우(2017), p. 98.

가산세 및 벌칙 규정을 살펴보고자 함

- 제Ⅲ장에서는 주요국의 가산세와 벌칙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가산세 및 벌칙 제도와 차이점을 검토하고자 함
- 제Ⅳ장에서는 제Ⅱ장과 제Ⅲ장에서 살펴본 이론 및 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산세 및 벌칙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가산세 및 벌칙제도 일반

1. 가산세 및 벌칙제도 개요

가. 가산세 및 벌칙의 개념

- 관세의 납부의무는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는 관세채무 확정방식인 신고납세제도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하여 확정됨
 - 신고납세제도란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한 다음 이를 세관에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제도임⁴⁾
- 신고납세제도하에서 납세의무자는 과세행정의 편의, 징세비용의 절감 및 세수의 적기 확보를 위하여 신고·납부의무뿐 아니라 여러 가지 협력의무를 부담함
 - 관세법령은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자료 보관 및 제출, 수출입 요건 구비, 감면 및 세율 혜택에 따른 조건 이행 등의 다양한 의무를 부과함
- 이에 따라 관세법령은 이러한 협력의무의 위반을 방지하고 그 위반의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⁵⁾
 - 즉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실한 의무이행자에게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의무위반자 또는 불이행자에게는 제재를 가함

4)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p. 92.

5) 정지선·최천규, 「가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19권 제1집, 한국세법학회, 2013, pp. 138~139.

- 관세법규의 실효성 내지 납세의무자에 대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 중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산세와 벌칙에 따른 처벌임⁶⁾
 - 의무위반이 행정상의 질서유지에 장애를 주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벌칙에 따라 처벌함⁷⁾
-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임⁸⁾
 - 「국세기본법」은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라고 정의함⁹⁾
- 벌칙은 행정법규에서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정한 규정으로 관세법령상의 벌칙에 따른 처벌을 관세행정벌이라 함¹⁰⁾
 - 관세행정벌은 과거에 행해진 관세법령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으로써 관세법규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¹¹⁾
- 한편 관세법령은 관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세법적 성격과 물품의 수출·수입·반송 절차를 규정하는 통관법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음
 - 이는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¹²⁾ 「관세법」의 목적에서 나타남

6) 정지선·최천규(2013), p. 148.

7) 김정식·서희열, 『우리나라 가산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연구소, 2010, p. 17.

8)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9)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10) 벌칙이란 처벌을 정하여 놓은 규칙을 말하지만, 언어관습상 벌칙을 그 처벌자체의 의미로 사용하고 「관세법」에서도 관세행정벌을 규정한 장의 제목을 벌칙으로 명시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관세행정벌과 벌칙을 동일한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함

11) 김기인(2007), p. 744.

12) 「관세법」 제1조

- 따라서 관세법령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인 가산세와 관세행정벌 또한 관세의 부과·징수와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의무위반 제재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 가산세와 관세행정벌은 납세신고, 감면신청 등의 조세법적 의무와 수출입신고, 보세 구역장치, 운송신고 등의 통관법적 의무의 위반에 적용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관세법령의 조세법적인 의무에 대한 제재로서의 가산세와 관세행정벌에 한하여 살펴보고자 함
 - 관세당국의 관세수입 확보와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 측면이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따라 범위를 한정함

나. 가산세 및 벌칙의 법적 성격

- 가산세와 관세행정벌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두 제도 간의 차이를 파악하여 각 제도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입법 및 운용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함
 - 가산세와 관세행정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와 판례의 입장이 존재함

1) 가산세의 법적 성격

- 「관세법」에서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고¹³⁾ 명시하여 가산세를 조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학설과 판례에서는 조세와 본질적인 성질이 다르다고 봄
 - 가산세는 징수절차상의 편의 때문에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립·확정되는 국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름¹⁴⁾

13) 「관세법」 제320조

14)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 다수설과 판례는 가산세를 세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질서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로 봄¹⁵⁾
 - 가산세는 행정벌 중에서 행정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과태료가 과해지는 것임¹⁶⁾
 -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임¹⁷⁾

- 이와 같이 가산세를 행정적 제재로 보면 행정벌과의 구분이 어렵고,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벌이 과해질 경우 이중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함
 - 특히 가산세가 부과된 수입신고가 관세포탈에 해당되어 처벌되는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 이중처벌이 발생할 수 있음

- 반면 가산세가 행정벌과는 구분되는 조세행정상의 특별과벌이라는 견해도 있음¹⁸⁾
 - 즉 가산세는 형법상의 형종에 의하지 않으므로 행정형벌과도 다르고, 과태료를 과하는 행정질서벌과도 차이를 보인다는 것임
 - 그러나 과벌이라는 용어가 행정벌의 일종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 또는 가산세에 대한 처벌 또는 제재의 요소를 부정하고 신고·납부의무의 이행과 신고·납세제도의 정착을 위한 특별한 경제적 부담으로 보기도 함¹⁹⁾
 - 이 견해에 의하면 가산세는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간접적인 제재이지만, 과세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는 기능도 아울러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가산세는 세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15) 대법원 1977. 6. 7. 선고 74누212 판결

16) 권형기·박훈, 「조세 중심 및 적법절차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방안: 조세의 범위 및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1호, 국회예산정책처, 2020, p. 145.

17)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18) 정지선·최천규(2013), p. 143; p. 145.

19) 김정식·서희열(2010), p. 12.

- 다음으로 가산세는 납세의무를 정당하게 이행한 자와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상의 조치이며, 침해된 국고이익을 회복하는 수단으로서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진다는 입장도 있음²⁰⁾
 - 이 견해는 가산세에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요소가 있다는 것은 긍정하면서 공평부담 및 손해배상의 성격을 강조함²¹⁾
 - 그러나 형평의 저해나 국고의 손실은 이자상당액을 부담시킴으로써 경제적으로 회복 가능함에도 이를 초과하는 가산세는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있음
- 한편 가산세를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과 손해배상을 위한 이자의 성격을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함²²⁾
 - 즉 제재요소로서의 가산세는 의무위반을 방지하고, 불이행 시 처벌하는 제도인 반면 이자는 지연 또는 과소납부로 인한 국고침해의 보상을 위한 제도임
 - 따라서 의무위반자가 다른 채무보다 조세채무를 먼저 변제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가산세의 이자율은 상업대출이자율보다 높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음

2) 관세행정벌(벌칙)의 법적 성격

- 관세행정벌은 행정벌의 일종으로 관세법령의 위반이나 미수에²³⁾ 대한 제재로서 과하여 지는 처벌임
 - 행정벌은 행정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처벌이라는 제재를 가함

20) 길용원, 「가산세의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와 그 증명책임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5호, 한국조세연구소, 2014, p. 9.

21) 김정식·서희열(2010), pp. 12~13.

22) Christophe Waerzeggers, Cory Hillier and Irving Aw, *Designing interest and tax penalty regimes*, Tax law IMF technical note volume 2019(1), IMF Legal Department, 2019, p. 1; p. 5.

23)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특별부속서 H 제1장 E3/F1

-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일반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집행벌이나 징계벌과 구분됨²⁴⁾
 - 집행벌은 행정법규상 의무 불이행 시 일정 금액이 부과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알림으로써 미래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임
 - 징계벌은 특별행정법관계에서 그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제재로 행정벌과 목적·대상·권력의 기초가 다르므로 하나의 행위에 대해 병과가 가능함
 - 세관공무원이 「관세법」을 위반하여 밀수를 하면 행정형벌로 처벌을 받게 되고, 동시에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파면 등의 징계벌을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행정벌은 처벌의 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되며, 관세법령과 관련하여 각각 관세형벌과 관세질서벌로 일컬음
 - 행정형벌은 「형법」에 형명이 있는 형벌이 과하여지는 제재로 이 중에서 「관세법」은 징역, 벌금, 몰수를 과하고 있음
 - 행정형벌은 형사벌과 구별에 대한 학설이 대립하지만 반윤리적 요소의 여부에 따라 상대적·유동적이라는 견해가 널리 주장되고 있음²⁵⁾
 - 행정질서벌은 「형법」에 형명이 없는 제재로 「관세법」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함
- 일반적으로 행정벌의 구분은 의무위반이 직접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와 그 위반이 간접적으로 행정상 질서에 장애를 줄 경우로 설명됨²⁶⁾
 - 전자의 경우 그 반사회성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형벌이 과해지고, 후자의 경우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과해짐²⁷⁾
- 이와 같이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일반사회의 법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24)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21, p. 699; p. 747.

25) 홍정선(2021), p. 698.

26)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전원재판부

27) 권형기·박훈, 「세법상 행정질서벌과 조세형벌의 중복적용 여부와 그 위헌성 -부당과소신고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재를 중심으로」, 『법조』, 제68권 제5호, 법조협회, 2019, p. 150.

따라 구별되며, 그 구별기준은 입법적 문제이므로 법령으로 정해져야 함

- 헌법재판소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내용은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판시하였음²⁸⁾

□ 따라서 입법자는 위반행위의 법익침해의 정도가 강하여 강한 처벌이 필요하면 행정형벌로 규정할 것이고, 미약하다면 행정질서벌로 규정할 것임²⁹⁾

- 즉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중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는 그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얼마나 중대한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³⁰⁾

□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 위반행위는 행정형벌의 대상이나 행정질서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동시에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견해가 있음³¹⁾

-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두 가지 측면으로 제재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재량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고 봄

□ 동일한 행위가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면서 행정질서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가산세와 행정형벌과의 관계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함

- 가산세는 행정질서벌의 일종이라는 통설에 따라 행정형벌과 가산세의 관계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관계와 유사함

다. 가산세 및 벌칙의 목적 및 기능

□ 가산세와 관세행정벌은 관세법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간접적으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궁극적 목적과 기능에 공통점이 있음³²⁾

28)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전원재판부

29) 홍정선(2021), p. 716.

30) 권형기·박훈(2019), p. 151.

31) 홍정선(2021), p. 716.; 권형기·박훈(2019), p. 151.

32) 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4헌바26 전원재판부

- 가산세와 관세행정벌은 국가재정권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관세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할 목적을 갖는 제도임³³⁾
- 즉 두 제도는 국가재정수입의 확보를 도모하고 관세법령 위반을 예방하며, 공평한 조세부담을 보장하는 기능이 있음

- 우선 가산세와 관세행정벌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납세의무자의 적정한 신고납세의무의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국고수입의 확충을 도모하는 데 있음³⁴⁾
 - 특히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적정한 납세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원활한 조세수입을 도모함³⁵⁾
 - 관세포탈죄 역시 관세의 부과·징수권을 직접적·실질적으로 침해하여 관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는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관세수입의 확보에 기여함³⁶⁾

- 또한 가산세와 관세행정벌은 납세의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어 관세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³⁷⁾
 - 예방기능이란 납세의무에 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지워짐을 알려주어 그러한 의무위반을 범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기능임³⁸⁾
 - 가산세는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세금의 형식으로 제재를 가함으로써 장래의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³⁹⁾
 - 관세행정벌은 처벌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예방적 차원에서의 제재규정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⁴⁰⁾

33) 김정식·서희열(2010), p. 17.

34) 정지선·최천규(2013), p. 149.

35) 김정식·서희열(2010), pp. 9~10.

36) 박영기, 『관세형사법』, 세창출판사, 2020, p. 576.

37) 권형기·박훈(2020), p. 155.

38) 김정식·서희열(2010), p. 8.

39)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가7 전원재판부

40) 권형기·박훈(2020), p. 155.

- 가산세와 관세행정벌 모두 금전적인 제재의 반사적 효과로서 성실한 납세의무자를 보호하여 의무 위반자와의 공평부담을 도모하는 기능을 함⁴¹⁾
- 가산세는 납세와 관련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의무자를 차별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임

라. 가산세 및 벌칙의 관계

1) 가산세와 행정질서벌의 관계

- 가산세의 법적 성격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가산세는 세금의 형태로 부과·징수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행정질서벌이라는 것이 통설임⁴²⁾
 - 징수절차상의 편의 때문에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본래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보아야 함
- 즉 가산세는 행정질서벌의 일종이지만 일반 행정질서벌의 경우 과태료라는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반면 가산세는 세금의 형태로 가한다는 차이뿐이라는 것임⁴³⁾
 - 이 입장은 판례도 가산세가 세법상으로 정하여진 의무의 이행을 해태하였을 때에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질서벌적인 성질을 갖는 제재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봄
- 반면 최근에는 판례상의 '행정상의 제재'⁴⁴⁾라는 표현을 행정질서벌과 구분하여 가산세의 법적 성격을 설명하려는 견해도 있음⁴⁵⁾
 - 이러한 견해는 판례가 행정상 제재라는 입장에서 판시한 것과 행정법적인 성질을 지닌다는 입장에서 판시한 것이 혼재되어 있다고 봄

41) 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4헌바26 전원재판부

42) 정진오, 「세법상 가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조세법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세법학회, 2011, pp. 236~237.

43) 김정식·서희열(2010), p. 13.

44)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45) 정지선·최천규(2013), pp. 142~145.; 길용원(2014), pp. 8~9.

- 즉 가산세는 현대 행정의 변화에 따라 생겨난 새로운 형태의 제재로서 금전적 형태의 행정적 제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⁴⁶⁾
 - 가산세를 행정질서벌로 보는 것은 행정상 제재의 다양화를 도외시하고 가산세의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봄
 - 이와 같이 가산세를 의무위반 예방을 위하여 위반자들에게 과해지는 불이익인 행정상 제재라고 보는 견해는 최근 판례도 이러한 입장으로 기울었다고 봄⁴⁷⁾
- 그러나 가산세를 행정질서벌 또는 행정상의 제재로 이해하는 견해 모두 행정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형벌과의 관계의 검토가 필요함
 - 가산세와 행정형벌 모두 행정법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목적과 기능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⁴⁸⁾

2) 가산세와 행정형벌의 관계

- 가산세와 행정형벌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과함으로써 의무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양자 간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존재함⁴⁹⁾
 - 이들 모두 행정법령상 의무위반의 경우에 가해지는 불이익 처분이며, 의무이행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점을 가짐⁵⁰⁾
- 그러나 가산세는 국가재정권에 의하여 세금이라는 형식의 행정상 제재를, 행정형벌은 일반통치권에 따라 형벌이라는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그 형식이 다름⁵¹⁾

46) 정지선·최천규(2013), p. 145.

47) 김용원(2014), pp. 8~9.

48) 정지선·최천규(2013), p. 148.

49) 김용원(2014), p. 11.

50) 홍정선(2021), p. 791.

51) 정지선·최천규(2013), p. 148.

- 따라서 가산세의 부과주체는 행정기관이며, 행정형벌의 부과주체는 원칙적으로 사법기관임
- 이와 같이 가산세는 형벌이 아니므로 가산세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만을 확인하여 조세의 부과 절차에 따라 과징할 수 있음⁵²⁾
 - 즉 가산세는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책임능력·책임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음⁵³⁾
- 또한 가산세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행정형벌은 위반행위를 별로서 대신하기 위한 처벌임⁵⁴⁾
 - 가산세는 처벌보다는 납세의무자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줌으로써 행정법규의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는 수단임⁵⁵⁾
- 이와 같이 가산세와 행정형벌은 그 형식과 성격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목적과 기능에서 공통점이 있으므로 하나의 의무 위반행위에 무슨 처벌을 가할지 처벌내용의 구분 문제가 발생함
 - 즉 어떤 위반행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고, 어떤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 그 구분기준이 있어야 함
- 그 구분기준은 법령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관세법」을 비롯한 현행 조세법령에는 가산세와 행정형벌의 부과사유가 상당히 혼재되어 있음⁵⁶⁾
 - 이런 이유로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행위는 동시에 가산세의 부과요건 또한 충족하게 됨

52)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가13 전원재판부

53)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355 전원재판부

54) 김정식·서희열(2010), p. 9.

55) 정지선·최천규(2013), p. 148.

56) 김정식·서희열(2010), p. 19.

- 이에 따라 동시에 가산세와 행정형벌의 부과사유가 되는 행위에 대해 양자의 병과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됨
- 이런 점에 관하여 세법학에서는 대체로 행정법학에서의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의 구분 논리를 따르고 있음⁵⁷⁾
 - 행정벌인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역시 동일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제재라는 점에서 병과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됨
 - 이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일관성 있게 축적된 판례 또한 없는 것으로 보임
- 우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그 목적이나 성질이 다르므로, 이를 병과하여도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음⁵⁸⁾
 - 대법원은 행정상의 질서벌은 형법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질서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⁵⁹⁾
 - 또한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 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함⁶⁰⁾
 - 이 결정을 국가가 행하는 제재의 일종인 행정질서벌과 형벌을 구분한 것으로 보아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병과를 이중처벌로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견해임
- 반면 부정설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모두 넓은 의미의 처벌이고,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벌이므로 양자를 병과할 수 없다고 봄⁶¹⁾

57) 김정식·서희열(2010), p. 18.

58) 권형기·박훈(2019), p. 159.

59)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874 판결

60)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전원재판부

61) 홍정선(2021), p. 715.

- 헌법재판소는 처벌에 국가의 제재·불이익 처분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면서도 행정 질서벌과 행정형벌은 그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있으므로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배치될 수 있다고 설시하기도 함⁶²⁾
 -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형벌을 부과하면서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면 국가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음
- 이와 같은 긍정설·부정설과는 별개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는 과잉규제 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⁶³⁾
 - 이러한 입장은 헌법재판소가 행정제재와 형벌적 제재의 병과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잉금지 원칙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를⁶⁴⁾ 논거로 함
 - 당해 사례에서 헌법재판소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여 하나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아무런 제한 없이 제재를 거듭하는 것이 헌법상 용인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
 - 또한 제재의 총합이 법 위반행위에 비하여 지나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법자는 여러 제재수단 간의 선택 가능성을 열어 놓되, 그 병과를 금지함으로써 부당한 과잉 제재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봄
- 한편 실무적으로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행위가 가산세와 행정형벌의 제재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를 선호함에 따라 실제로 이중처벌 발생은 희박함⁶⁵⁾
 - 이는 행정형벌의 형량이 지나치게 높아 이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기업의 도산, 전과자의 과다 양상 등이 우려되기 때문임
 - 또한 납세자의 조세회피방법이 교묘해짐에 따라 위반행위의 추적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져서 위반행위 처벌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62)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전원재판부(다만 사건에서 행정질서벌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동일한 행위가 아님을 이유로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판단함)

63) 서정우(2017), p. 114.

64)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65) 정진오(2011), p. 249.

- 반면 가산세 부과는 사법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빠르고 효율적이며, 상대적으로 입증책임이 낮아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처벌이 가능함⁶⁶⁾
- 그러나 가산세와 행정형벌의 병과사례가 존재하고, 이를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가산세와 행정형벌이 형식이나 법적성격이 달라 중복 부과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동일한 행위에 대해 두 번 이상의 제재를 부담한다는 것은 납세자에게는 과한 불이익으로 여겨질 수 있음⁶⁷⁾

2. 우리나라의 가산세 및 벌칙제도

가. 가산세제도

- 우리나라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에 따라 관세의 납부 의무가 확정되도록 함에 따라 불성실한 신고·납부 또는 신고의 미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함
- 관세의 신고·납부 의무와 관련된 가산세는 「관세법」 제42조에서 정하고 있음

1) 가산세의 부과

-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 발생한 경우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경우 부과됨
-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가산금은 비슷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산세와 통합됨⁶⁸⁾

66) Waerzeggers et al.,(2019), p. 5.

67) 김정식·서희열(2010), p. 22.

- 신고납부한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보정, 수정신고, 경정을 할 수 있으나 가산세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시에 징수되고, 보정 시에는 보정이자를 납부해야 함⁶⁹⁾
 -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에 대한 가산세는 기존에는 징수되지 않았지만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설됨⁷⁰⁾
-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함⁷¹⁾
-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 미납부세액×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1일 10만분의 25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100분의 3
 - 기존 가산금은 일차가산금과 증가산금으로 구성되는데 일차가산금은 동일하게, 증가산금은 매달에서 매일 가산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납부지연가산세로 편입됨⁷²⁾
-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신고불성실 행위와 납부 불성실 행위에 대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징수함⁷³⁾
- 불성실한 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 부족세액×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⁷⁴⁾×1일 10만분의 25

68) 「관세법」 [2019. 12. 31., 일부개정] 개정이유

69)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70) 「관세법」 [2015. 12. 15., 일부개정] 개정이유

71) 「관세법」 제42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72) 증가산금으로 납부기한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부세액의 1만분의 75가 가산되었는데, 1개월을 30일로 계산하면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과 동일하게 매일 10만분의 25가 가산됨

73) 「관세법」 제42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74) 개정 전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증가산금과 통합되면서 납부일까지의 기간으로 변경되었음. 따라서 부족세액을 체

- 부족세액의 10%는 과소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이며, 이자성격의 금액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기존의 가산금과 함께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됨⁷⁵⁾
- 다만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함⁷⁶⁾
 - 부당한 방법이란 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다음의 방법을 말함
 - 이종송품장·이종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 또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무신고와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징수함⁷⁷⁾
 - 무신고가산세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
 - 해당 관세액×수입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1일 10만분의 25
 - 해당 관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1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함)

납한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는 기존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는 기존의 증가산세가 부과되는 것과 동일함

75) 납부지연가산세는 기존의 일차가산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성격의 금액(기존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증가산금을 통합한 것)을 합친 것을 말하지만 기존의 일차가산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는 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이 이루어지고 해당 부족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징수되지 않음

76) 「관세법」 제42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77) 「관세법」 제42조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 다만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40에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친 금액으로 함

2) 가산세의 제한 및 감면

- 기존의 가산금을 가산세와 통합하면서 가산세 규정에도 부과기간, 징수최저한과 같은 제한이 신설됨
 -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함⁷⁸⁾
 - 체납된 관세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⁷⁹⁾
 - 징수최저한이 적용되는 대상을 체납된 관세로 명시함에 따라 부족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또한 단서조항이었던 가산세의 미적용 규정과 시행령에 규정했었던 가산세 감면사유를 법률에 신설함
 - 다만 무신고가산세는 미적용 규정이 단서조항으로 남아있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을 면제 또는 경감함⁸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됨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된 경우
 -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78) 「관세법」 제42조 제4항

79) 「관세법」 제42조 제4항

80)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우편물
-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됨
 -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 사전세액 심사대상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경감되나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함
 -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금액의 100분의 20
 -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금액의 100분의 10
- 관세심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금액의 100분의 50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징수에서 제외됨⁸¹⁾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40
 -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
 -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81) 「관세법」 제42조 제2항

나. 벌칙제도

- 우리나라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여 납세의무자의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납부의무의 준수가 중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에 따라 처벌함
 - 「관세법」 제11장에서는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로 징역, 벌금, 몰수의 형벌과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벌칙을 살펴보고자 함

1)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의 진정을 해치는 경우 처벌함
 - 이는 「관세법」 전반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통관질서의 적정성 유지 및 국가재정수입의 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⁸²⁾
- 다음의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⁸³⁾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⁸⁴⁾
 -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운영하거나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82) 박영기(2020), p. 392.

83) 「관세법」 제268조의2 제1항

84) 「관세법」 제268조의2 제2항

-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은 미수범 등에 대하여도 처벌함⁸⁵⁾
 -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함

2) 밀수출입죄·밀수품 취득죄

- 「관세법」에 따라 물품을 수출·입·반송하는 통관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함
 - 이는 통관절차의 적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유세품의 경우에는 부차적으로 국가재정수입의 확보도 보호함⁸⁶⁾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⁸⁷⁾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다만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함)
 -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⁸⁸⁾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 밀수출죄에 해당하는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⁸⁹⁾

85) 「관세법」 제271조

86) 박영기(2020), p. 419; p. 499.

87) 「관세법」 제269조 제2항

88) 「관세법」 제269조 제3항

89) 「관세법」 제274조

- 밀수출입죄, 밀수품 취득죄는 미수범 등에 대하여도 처벌함⁹⁰⁾
 - 그 정황을 알면서 밀수출입죄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함
 - 밀수출입죄, 밀수품 취득죄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함
- 밀수출입죄 또는 밀수품 취득죄의 경우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함⁹¹⁾
 - 다만 밀수출죄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3) 부정수출입죄·부정수출입품 취득죄

- 수출입통관 시 세관에서 관련 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함
 - 이는 통관절차의 적정이 주된 보호법익이지만, 국가재정수입의 확보도 부차적 보호법익임⁹²⁾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⁹³⁾
 -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⁹⁴⁾

90) 「관세법」 제271조; 제274조

91) 「관세법」 제282조 제2항

92) 박영기(2020), p. 477; p. 499.

93)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

94) 「관세법」 제270조 제2항

-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⁹⁵⁾
 -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
- 부정수출입죄에 해당하는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⁹⁶⁾
- 부정수출입죄, 부정수출입품 취득죄는 미수범 등에 대하여도 처벌함⁹⁷⁾
 - 그 정황을 알면서 부정수출입죄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함
 - 부정수출입죄, 부정수출입품 취득죄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함

4) 관세포탈죄·부정감면죄·부정환급죄

- 관세의 부과·징수권을 직접적·실질적으로 침해하여 관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 처벌함⁹⁸⁾
 - 관세포탈죄 등은 관세가 납부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재정수입의 확보가 주된 보호법익이 됨
-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95) 「관세법」 제270조 제3항

96) 「관세법」 제274조

97) 「관세법」 제271조; 제274조

98) 박영기(2020), p. 576.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⁹⁹⁾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를 신청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¹⁰⁰⁾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¹⁰¹⁾

-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함

□ 관세포탈죄, 부정감면죄, 부정환급죄는 미수범 등에 대하여도 처벌함¹⁰²⁾

- 그 정황을 알면서 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함
-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함

5) 가격조작죄

□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경우 처벌함

- 수출입통관의 적정을 위한 규정으로 관세와 무관하게 다른 목적을 위하여 수출입 가격을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재정수입 확보의 보호법익은 작음¹⁰³⁾

99) 「관세법」 제270조 제1항

100) 「관세법」 제270조 제4항

101) 「관세법」 제270조 제5항

102) 「관세법」 제271조

- 다음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¹⁰⁴⁾
 - 보정신청, 수정신고, 수출·입·반송신고, 간이 수출·입·반송신고, 입항 전 수입신고

6) 강제징수면탈죄·명의대여죄

- 체납세액을 면탈하거나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재산 등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처벌함
 - 이는 국가재정수입의 확보 및 관세징수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¹⁰⁵⁾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¹⁰⁶⁾
 -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강제징수를 면탈할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 「관세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탈루,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
 - 상기의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¹⁰⁷⁾

103) 박영기(2020), p. 509.

104) 「관세법」 제270조의2

105) 박영기(2020), p. 624.

106) 「관세법」 제275조의2

107) 「관세법」 제275조의3

7) 허위신고죄 등

- 허위신고죄는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토관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국가재정수입의 확보를 도모함¹⁰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¹⁰⁹⁾
 - 수출·입·반송신고, 간이 수출·입·반송신고, 입항 전 반입신고를 할 때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할 때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
- 감면물품 등 용도 외 사용·양도죄는 감면조건 등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으로써 관세 감면 및 용도세율 제도의 실효와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함임¹¹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과실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¹¹¹⁾
 - 재수출감면물품, 「관세법」 외의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 또는 확인 없이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 용도세율적용물품, 감면받은 세율불균형물품·학술연구용품·종교용품 등·특정물품·환경오염방지물품, 재수출면세물품을 세관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 외교관용면세물품을 세관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

108) 박영기(2020), p. 635.

109)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4호의2

110) 박영기(2020), p. 648.

111)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제2호; 제3호

Ⅲ. 주요국의 가산세 및 벌칙제도

1. 일본

가. 가산세제도

1) 연체세

-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관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는 그 미납관세액에 대해 연체세를 납부해야 함¹¹²⁾
 - 연체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관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7.3%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¹¹³⁾
 - 그러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을 경과하는 날 후 연체세는 그 미납에 따른 관세액에 연 14.6%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세에 대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함¹¹⁴⁾
 - 부득이한 이유로 세액 등에 오류가 있어 법정납부기한 후에 미납과 관련한 관세금액이 확정되고 그 상황에 대해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를 한 날이나 경정통지서 또는 결정통지서가 발부된 날까지의 기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해당 경우에 정하는 금액을 면제

112) 일본 「관세법」 제12조 제1항

113) 연 7.3%를 일로 환산하면 1일 만분의 2의 연체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14) 일본 「관세법」 제12조 제6항; 제7항

하나 체납처분 정지취소 또는 환가유예의 취소의 원인이 될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면제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체납처분의 집행정지 또는 환가의 유예를 한 경우 그 정지 또는 유예를 한 기간에 해당하는 중 관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을 경과하는 날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재해로 인한 기한의 연장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해야 할 기한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관세징수에 관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 그 정지기간 중 관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을 경과하는 날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관세에 관한 연체세에 대해 해당 경우에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면제할 수 있음¹¹⁵⁾

- 환가의 유예를 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예를 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납세의무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납기 또는 변제기가 도래한 관세 이외의 공과금 또는 채무를 경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지속 또는 생활의 유지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어 경감 또는 면제된 때
 - 납세의무자의 사업 또는 상황에 따라 그 연체세 납부를 곤란하게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체납한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받은 경우 관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을 경과하는 날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경우에서 정하는 금액
 - 교부요청에 따라 교부받은 금전을 관세에 충당한 경우 교부요청을 받은 집행기관이 강제환가절차에서 당해 금전을 수령한 날의 다음날부터 그 충당한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115) 일본 「관세법」 제12조 제8항; 「관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 지진, 풍수해,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로 관세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 이후 7일이 경과한 날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압류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해 교부받은 금전을 관세에 충당한 경우 환가 집행결정을 한 행정기관이 당해 매각대금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한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화약류의 폭발, 교통사고 기타 인적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없거나 관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그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소멸한 날 이후 7일을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관세액의 연체세는 다음에서 정하는 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함¹¹⁶⁾

- 납세신고를 한 관세에 대해 법정납부기한부터 1년을 경과하는 날 이후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된 경우 그 법정납부기한을 1년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당해 수정신고가 되거나 경정통지서가 발부된 날까지의 기간
- 기한 후 특례신고서가 제출된 관세에 대해 특례신고서가 제출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을 경과하는 날 이후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된 경우 그 특례신고서가 제출된 날의 다음날부터 당해 수정신고가 되거나 경정통지서가 발부된 날까지의 기간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
 -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관세를 면하거나 관세환급을 받은 자가 당해 관세에 대한 조사가 있어 이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관세를 면하거나 관세환급을 받은 자에게 당해 관세에 관해 경정을 한 경우

□ 감액경정이 있는 후 수정신고 또는 증액경정을 한 경우 당해 수정신고 또는 증액경정에

116) 일본 「관세법」 제12조 제10항

따라 납부해야 할 관세 중 일부에 대한 연체세는 다음의 기간을 공제하여 적용함¹¹⁷⁾

- 연체세의 계산에서 공제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음
 - 납세신고 또는 기한 후 특례신고서의 제출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감액경정에 따른 경정통지서가 발부된 날까지의 기간
 - 감액경정에 따른 경정통지서가 발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가 되거나 증액경정에 따른 경정통지서가 발부된 날까지의 기간
- 수정신고 또는 증액경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관세 중 일부란 다음의 세액 중 적은 세액에 상당하는 관세로 함
 - 수정신고 또는 증액경정에 따라 납부할 관세
 - 납세신고 또는 기한 후 특례신고서의 제출에 따라 납부할 세액에서 수정신고 또는 증액경정 이전의 세액을 공제한 세액(감액경정으로 환급된 세액)

2) 과소신고가산세

- 납세신고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이 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당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함¹¹⁸⁾
 - 다만 수정신고가 그 신고와 관련된 관세에 대한 조사에 따라 경정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는 5%의 비율을 적용함
 - 또한 수정신고가 그 신고와 관련된 관세에 대한 조사의 사전통지가 있기 전에 그 조사에 따라 경정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¹¹⁹⁾
- 기한 후 특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이 된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과소신고가산세가 징수됨¹²⁰⁾
 - 특례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신고가 없었던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117) 일본 「관세법」 제12조 제11항; 「관세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118) 일본 「관세법」 제12조의2 제1항

119) 일본 「관세법」 제12조의2 제4항

120) 일본 「관세법」 제12조의2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9조의3

인정되는 경우

- 제출기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특례신고서의 제출을 하고, 그 신고와 관련된 관세에 대한 조사에 따라 결정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한 후 특례신고서가 제출된 날의 전날부터 1년 전까지의 사이에 무신고가산세 또는 증가산세가 부과된 적이 없는 경우
 - 기한 후 특례신고서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의 전액이 제출기한까지 납부된 경우
-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당초 납세신고에 따른 세액과 50만엔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에 그 초과하는 세액의 5%를 가산함¹²¹⁾
 -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은 당해 수정신고 등의 전에 있었던 수정신고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의 합계액인 누적증차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함¹²²⁾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함¹²³⁾
 - 납부할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 중 당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 전의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인정되는 사실에 근거한 세액
 - 수정신고 또는 경정 전에 감액경정이 된 경우 다음 세액 중 적은 세액
 - 당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 당초 납세신고에 의해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수정신고 또는 경정 전의 세액을 공제한 세액(감액경정으로 환급받는 세액)

121) 일본 「관세법」 제12조의2 제2항

122) 일본 「관세법」 제12조의2 제6항

123) 일본 「관세법」 제12조의2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9조의2

3) 무신고가산세

- 기한 후 특례신고서의 제출·수입 시 납세신고가 없는 경우 조사에 따른 결정이 있거나 그 이후 수정신고·경정이 된 경우 당해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에 15%를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함¹²⁴⁾
 - 다만 기한 후 특례신고서의 제출 또는 수정신고가 그 신고와 관련된 관세에 대한 조사에 따라 경정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는 10%의 비율을 적용함
 - 또한 기한 후 특례신고서의 제출 또는 수정신고가 그 신고와 관련된 관세에 대한 조사의 사전통지가 있기 전에 그 조사에 따라 경정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¹²⁵⁾
-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 당초 신고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 그 수입 시 또는 특례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당해 신고가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¹²⁶⁾
 - 제출기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특례신고서의 제출을 하고, 그 신고와 관련된 관세에 대한 조사에 따라 결정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¹²⁷⁾
 - 기한 후 특례신고서가 제출된 날의 전날부터 1년 전까지의 사이에 무신고가산세 또는 증가산세가 부과된 적이 없는 경우
 - 기한 후 특례신고서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의 전액이 제출기한까지 납부된 경우
- 기한 후 특례신고서 제출·결정 이후 수정신고·경정이 된 경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함¹²⁸⁾

124) 일본 「관세법」 제12조의3 제1항

125) 일본 「관세법」 제12조의3 제5항

126) 일본 「관세법」 제12조의3 제1항

127) 일본 「관세법」 제12조의2 제6항; 「관세법 시행령」 제9조의3

- 납부할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 중 당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 전의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인정되는 사실에 근거한 세액
- 수정신고 또는 경정 전에 감액경정이 된 경우 다음 세액 중 적은 세액
 - 당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 당초 납세신고에 의해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수정신고 또는 경정 전의 세액을 공제한 세액(감액경정으로 환급받는 세액)
- 기한 후 특례신고·결정 또는 그 후의 수정신고·경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5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에 그 초과하는 세액의 5%를 가산함¹²⁹⁾
- 기한 후 특례신고·결정 이후 수정신고·경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은 당해 수정신고 등의 전에 있었던 다음의 경우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의 합계액인 누적납부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함¹³⁰⁾
 - 기한 후 특례신고서의 제출 또는 결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 기한 후 특례신고서의 제출,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이 있었던 날의 전날부터 5년 전의 기간에 무신고가산세 또는 증가산세가 부과된 적이 있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에 납부해야 할 세액의 5%를 가산함¹³¹⁾
- 다만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기한 후 특례신고서의 제출 또는 수정신고가 그 신고에 관한 관세에 대한 조사에 따른 경정, 결정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는 제외함
- 또한 5년 내의 기간에 부과된 무신고가산세가 기한 후 특례신고서의 제출 또는 수정신고가 그 신고에 관한 관세에 대한 조사에 따른 경정, 결정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였던 것은 제외함

128) 일본 「관세법」 제12조의3 제4항; 「관세법 시행령」 제9조의2

129) 일본 「관세법」 제12조의3 제2항

130) 일본 「관세법」 제12조의3 제8항

131) 일본 「관세법」 제12조의3 제3항

4) 증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시 납세의무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납부할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고 이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때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대신 그 기초가 되어야 할 세액의 35%를 부과함¹³²⁾
 - 다만 수정신고가 그 관세에 대한 조사에 따른 경정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는 제외함
 - 과소신고가산세의 기초가 되어야 할 세액에는 은폐 또는 가장되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 분명한 금액을 공제함

- 무신고가산세 적용 시 납세의무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납부할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고 이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때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대신 그 기초가 되어야 할 세액의 40%를 부과함¹³³⁾
 - 다만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기한 후 특례신고서의 제출 또는 수정신고가 그 신고에 관한 관세에 대한 조사에 따른 경정, 결정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는 제외함
 - 무신고가산세의 기초가 되어야 할 세액에는 은폐 또는 가장되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 분명한 금액을 공제함

- 다음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에 따른 증가산세에 그 기초가 되어야 할 세액에 10%를 가산함¹³⁴⁾
 -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어야 할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한 바에 따라 기한 후 특례 신고서를 제출,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을 한 날의 전날부터 5년 전까지의 기간에 무신고 가산세 또는 증가산세를 부과한 적이 있는 때

132) 일본 「관세법」 제12조의4 제1항

133) 일본 「관세법」 제12조의4 제2항

134) 일본 「관세법」 제12조의4 제3항

나. 벌칙제도

1) 관세포탈죄·관세포탈물품 취득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¹³⁵⁾
 -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관세를 면하거나 관세를 환급받은 자
 - 관세를 납부해야 할 물품에 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 다음의 자는 관세포탈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함¹³⁶⁾
 - 관세사의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관세를 면하거나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또는 관세를 납부해야 할 물품을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 당해 행위를 한 관세사

- 관세포탈죄와 관세포탈죄의 예에 의한 관세사는 미수범, 예비범에 대하여도 처벌함
 - 관세포탈죄 등의 실행에 착수하여 미수에 그친 자는 본죄의 예에 의함¹³⁷⁾
 - 관세포탈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¹³⁸⁾
 - 예비범에 관한 관세 또는 관세환급 금액의 10배가 5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은 500만엔을 초과하고 당해 관세 또는 관세환급 금액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음¹³⁹⁾

- 관세포탈죄 등 또는 미수범에 관한 관세 또는 관세환급 금액의 10배가 1천만엔을 초과하는

135) 일본 「관세법」 제110조 제1항

136) 일본 「관세법」 제110조 제2항

137) 일본 「관세법」 제110조 제3항

138) 일본 「관세법」 제110조 제5항

139) 일본 「관세법」 제110조 제6항

경우 벌금은 1천만엔을 초과하고 당해 관세 또는 관세환급 금액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음¹⁴⁰⁾

- 관세포탈죄에 관련된 물품에 대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운반·보관·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처분·중개 또는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¹⁴¹⁾
- 관세포탈죄에 관련된 관세 또는 관세환급 금액의 5배가 5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은 500만엔을 초과하고 당해 관세 또는 관세환급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음¹⁴²⁾

2) 부정수출입죄·부정수출입물품 취득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¹⁴³⁾
 - 수출·반송 또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할 물품에 대해 해당 허가를 받지 않고 당해 물품을 수출·반송하거나 수입한 자
 - 수출·반송 또는 수입허가를 위한 신고 또는 검사를 하는 때에 허위로 신고 또는 증명을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물품을 수출·반송하거나 수입한 자
- 다음의 자는 부정수출입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함¹⁴⁴⁾
 - 수출·반송 또는 수입허가를 위한 신고 또는 검사를 하는 때에 관세사가 허위로 신고 또는 증명을 하거나 허위서류의 제출을 통해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경우 당해 행위를 한 관세사

140) 일본 「관세법」 제110조 제4항

141) 일본 「관세법」 제112조 제1항

142) 일본 「관세법」 제112조 제2항

143) 일본 「관세법」 제111조 제1항

144) 일본 「관세법」 제111조 제2항

- 부정수출입죄와 부정수출입죄의 예에 의한 관세사는 미수범, 예비범에 대하여도 처벌함
 - 부정수출입죄 등의 실행에 착수하여 미수에 그친 자는 본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함¹⁴⁵⁾
 - 부정수출입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¹⁴⁶⁾
 - 다만 당해 범죄에 관련된 물품가격의 5배가 5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은 해당 가격의 5배 이하로 함
- 부정수출입죄 등 또는 미수범에 관련된 물품가격의 5배가 1천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은 해당 가격의 5배 이하로 함¹⁴⁷⁾
- 부정수출입죄에 관련된 물품을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운반·보관·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처분·중개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¹⁴⁸⁾
 - 다만 당해범죄에 관련된 물품가격의 3배가 5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은 해당 가격의 3배 이하로 함

3) 기타 관세의 신고납부와 관련된 죄

- 다음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¹⁴⁹⁾
 - 제조용원료품을 세관장의 승인 없이 그 수입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용도 이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한 자
 -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세관장의 승인 없이 그 수입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용도 이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한 자

145) 일본 「관세법」 제111조 제3항

146) 일본 「관세법」 제111조 제4항

147) 일본 「관세법」 제111조 제1항

148) 일본 「관세법」 제112조 제3항

149) 일본 「관세법」 제112조의2

- 정당한 이유 없이 특례신고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¹⁵⁰⁾
- 다만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면제할 수 있음

2. 호주

가. 가산세제도

- 호주는 「조세행정법(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에서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납부지연에 관해 부과하는 이자성격의 가산세의 적용대상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음¹⁵¹⁾
 - 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는 「소득세평가법(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에 따른 신고서·통지·진술·기타서류의 제출이 지연된 경우 적용됨¹⁵²⁾
- 또한 「관세법」이나 각종 수출입 통관 관련 지침에서도 가산세에 대한 규정은 하고 있지 않음
 -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납부지연, 과소신고,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규정이나 관련 설명이 없음
- 우선 납부지연의 경우 「관세법」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관세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가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음¹⁵³⁾

150) 일본 「관세법」 제113조의2

151) 호주 「조세행정법」 8AAB

152) 호주 「조세행정법」 SCHEDULE 1 286-25

153) 호주 「관세법」 71F(1); Australian Customs Service, "Payment," *Industry Imports Manual* VI.2, 2007. 2, p. 4.

- 수입신고 후 30일이 경과한 때에 관세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된 관세의 납부 기한이 기재된 미납통지서가 발행(Outstanding Payment Advice)됨
- 미납통지서가 발행된 후 미납관세의 납부기한인 40일 이내에 미납관세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당해 수입신고서는 취소됨
- 과소신고의 경우 「관세법」상 벌칙규정은 있으나 가산세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수입신고는 관세의 납부 전후 모두 수정될 수 있으며, 관세가 납부된 후 수정된 경우 부족세액이 발생한다면 미납통지서가 발행됨¹⁵⁴⁾
- 또한 무신고 역시 「관세법」상 벌칙규정은 있으나 가산세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나. 벌칙제도

- 호주는 벌칙에 의한 벌금을 「형법(Crimes Act 1914)」에 의한 벌금단위(Penalty Unit)로 부과하고 있음
 - 2021년 현재 1벌금단위는 222호주달러로 적용됨¹⁵⁵⁾

1) 밀수출입죄·밀수품취득죄

- 다음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이 조직된 경우 모든 관련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¹⁵⁶⁾
 - 밀수
 - 밀수품의 압수를 방해하거나 압수된 밀수품을 탈취

154) A Customs and Boarder Protection Service, *Documentary Import Declaration Comprehensive Guide*, 2013, p. 30.

155) Australian Border Force, "Understanding the Customs Act Infringement Notice Scheme."

156) 호주 「관세법」 제231조

- 밀수를 한 자는 밀수품과 관련된 관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당해 관세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함¹⁵⁷⁾
 - 밀수품과 관련된 관세란 다음의 날짜에 적용되는 관세를 말함
 - 법원이 범죄를 저지른 날을 아는 경우 그날
 - 법원이 범죄를 저지른 날을 모르는 경우 범죄에 대한 기소가 시작된 날
 - 다만 법원이 밀수품과 관련된 관세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1천 벌금단위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이 부과됨

- 밀수품을 불법적으로 운송 또는 점유하는 자는 법원이 당해 물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물품가격의 3배 또는 1천 벌금단위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함¹⁵⁸⁾
 - 다만 법원이 당해 물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1천 벌금단위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함

- 밀수품을 불법적으로 운송 또는 점유한 자에 대하여 기소를 대신하여 침해통지(Infringement Notice)를 하여 당해 통지에 명시된 벌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음¹⁵⁹⁾
 - 침해통지에 따른 벌금은 개인의 경우 15 벌금단위, 법인의 경우 75 벌금단위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벌금이 물품의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벌금단위에 따른 벌금은 적용되지 않음

2) 관세포탈죄

- 다음의 자는 60 벌금단위 또는 포탈세액(부족세액 또는 과다환급액)보다 높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함¹⁶⁰⁾

157) 호주 「관세법」 제233조; 제233AB조 (1)

158) 호주 「관세법」 제233조; 제233AB조 (2)

159) 호주 「관세법」 제243X조

160) 호주 「관세법」 제243T조 (1)(a), (3)

- 중요한 사항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세관공무원에게 하거나 하도록 하는 자
 - 세관공무원에게 하는 진술에서 중요한 사항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하는 사실이나 내용을 생략하거나 생략하도록 하는 자
- 다만 상기의 벌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됨¹⁶¹⁾
- 물품에 대하여 적절하게 납부되어야 하는 관세액이 당해 진술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없었다면 납부했어야 할 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 또는 당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없었다면 환급되었어야 할 관세액이 적절하기 환급되었어야 하는 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 관세를 포탈한 자에 대하여 기소를 대신하여 침해통지를 하여 당해 통지에 명시된 벌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음¹⁶²⁾
- 침해통지에 따른 벌금은 법원에서 과징할 수 있는 벌금의 1/4 또는 개인의 경우 15 벌금단위, 법인의 경우 75 벌금단위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벌금이 부족세액 또는 과다환급액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경우 벌금단위에 따른 벌금은 적용되지 않음
 - 관세포탈죄의 경우 부족세액 또는 과다환급액의 20%가 부과됨¹⁶³⁾
- 한편 관세포탈죄는 진술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자발적으로 서면의 오류통지(Voluntary Disclosure)를 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¹⁶⁴⁾
- 오류통지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

161) 호주 「관세법」 제243T조 (1)(b)

162) 호주 「관세법」 제243X조

163) Australian Customs Service, "Amending Import Declarations-Nature 10," *Industry Imports Manual V1.0*, 2007. 2, p. 4.

164) 호주 「관세법」 제243T조 (4)

- 진술이 사실 또는 내용의 생략으로 인하여 중요한 부분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
 - 오류통지에 포함되는 오류 또는 누락의 예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¹⁶⁵⁾
 - 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하는 때에 관련 가격의 누락
 - 이전가격과 관련한 과세가격의 부정확한 조정
 - 품목분류의 오류 등
 - 이 경우 관세포탈죄를 범한 자는 관세포탈죄에 대한 침해통지를 받거나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물품에 대하여 적절하게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납부해야 함
- 자발적 통지가 다음 어느 하나가 시작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이는 자발적 통지로 간주되지 않음¹⁶⁶⁾
- 세관공무원이 진술 내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 관련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
 - 관세포탈죄에 관련한 침해통지
 - 관세포탈죄에 관련한 소송

3. 미국

가. 정산

- 미국은 납세자가 관세를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이하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정산(Liquidation, 이하 정산)의 추후 절차에 따라 납세액이 확정되므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았음

165)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Voluntary disclosure under Section 243T and 243U Customs Act 1901,"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Notice No.2016/25, 2016.

166) 호주 「관세법」 제243T조 (4A)

- 정산에 따라 납세자가 정산 기간 동안 모든 세액을 납부할 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산세 성격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음
- 다만 정산일 이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 미납세액에 이자가 가산하여 부과됨

1) 정산의 내용 및 절차

- 미국은 『연방법전(United States Code)』 제19편 관세(Customs Duties)에서 관세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산은 제4절(Tariff of 1930)의 부제 제3편(Subtitle III)의 제3장(Prat III)에서 규정하고 있음
 - 정산과 관련하여 ① 평가, 분류, 정산 절차 ② 세관에 의한 자발적인 재정산 ③ 정산 제한 ④ 관세 및 제세금의 납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미국 CFR상 관세의 정산은 제19편 관세(Customs Duties)에서 관세청, 국토안보부 및 재무부 등에서 관할하는 제1절(Chapter)의 제159장(Part. 159)에 규정되어 있음
 - 세부내용은 ① 범위 ② 과세표준의 단위 ③ 외국통화의 변환(무게, 용적, 그리고 측정) ④ 특별 관세 ⑤ 정산보류 ⑥ 지속적인 덤핑과 보조금의 상쇄 등이 있음
- 미국의 경우 통관은 다음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됨¹⁶⁷⁾
 - 수입물품이 미국 「관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반출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수입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반입신고(Entry)
 - 납세신고(Entry Summary, 이하 납세신고)
 - 수입자는 물품을 반출한 후 매 납세 신고서에 대응하여 추정된 세액을 납부 (Deposit)하고 관련 서류를 물품신고일(반출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 수입자가 신고 및 납부한 관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세관이 심사하여 관세를 확정하고, 부족분이 있을 경우 추가 징수를 하는 정산

167) 한국관세학회, 『기업의 심사부담 완화를 위한 납부세액 정산제도 등 도입방안 연구』, 관세청, 2008. 12, pp. 60~64; 김태인, 「미국 납부세액정산제도의 분석 및 도입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4권 제3호, 2008, p. 103.

- 수입자는 물품신고 또는 반출 후 일 12일 이내에 추정된 관세와 수수료(estimated duties and fees)를 납부해야 함
- 수입자가 반입신고와 함께 납부한 관세는 잠정적·추정적 관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입자의 납부세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세관의 사후심사(Entry Summary Review)를 통한 정산절차를 거치게 됨¹⁶⁸⁾
 - 정산절차를 통해 세관은 최종적으로 수입물품의 분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및 관세율이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수입물품의 신고 금액, 추가된 조정분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함¹⁶⁹⁾
- 정산 시 세관은 납세신고에 첨부된 서류뿐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입자에게 추가정보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¹⁷⁰⁾
 - 원가명세서, 상업 송장상의 원가 내역, 신고서 및 기타 관련 서류의 생산비용 등
- 수입되는 모든 물품(All entries)에 대한 정산의 기한은 1년 이내이나 다음의 경우 1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에 대해서는 통지가 이루어짐¹⁷¹⁾
 - 물품의 적절한 평가 또는 분류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없는 경우
 - 수입자가 법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하고 연장이 허용되어야 하는 정당한 이유(good cause)를 제시한 경우
 - 정보 제출을 위한 기한 연장에 대해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CBP가 검토 중인 유사한 사례가 존재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법원 또는 법규에 의거하거나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감면 관련 증빙 미제출, 서류 제출 담보 조건에서 서류 미제출, 금지 물품, 미국 제조업체의 소송 사유에

168) 19 U.S.C 1500

169) 19 U.S.C 1500

170) 19 U.S.C 1500

171) 19 C.F.R 159.12(a)~(c)

의해 영향을 받는 상품 등에 대해서는 정산이 보류됨¹⁷²⁾

- 법령 또는 법원 명령, 상무부, 기타 관련 기관 등에 의해 보류 해제 명령 후 6개월 이내에 세관의 정산이 이루어짐¹⁷³⁾

- 연장 및 보류 공식 통지 및 그 이유는 CBP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연장 통지는 게시일로 부터 최소 15개월 동안 전자적으로 보관됨

□ 다음의 경우 정산 기간은 추가적으로 1년 이내로 연장될 수 있음¹⁷⁴⁾

-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CBP의 승인 후 세관장의 판단하에 1년 이내의 기간이 연장됨
- 수입자가 법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하고 연장이 허용되어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
- 세관장이 연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은 3년으로 최대 4년의 기간 동안 정산이 가능함
- 4년 이내 미정산 시 납세 신고에 따라 정산됨

□ 세관장은 간주 정산(deemed liquidation) 또는 기존 정산 통지(notice of the original liquidation)가 수입자, 수하인, 관세사에게 송달된 후 90일 이내에 직권으로 재정산할 수 있음¹⁷⁵⁾

- 정산과 관련된 관세평가, 품목분류 등 법류 적용 오류에 대한 세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 사무적인 오류의 경우 정산 후에도 재정산이 가능함

□ 전자 데이터 교환 시스템에 따라 정산에 대한 통지를 재무장관(Secretary)이 규정에

172) 19 C.F.R 159.51-19 CFR 159.58

173) 19 U.S.C 1504

174) 19 C.F.R 159.12(d)

175) 19 C.F.R 173.3

따라 규정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수입자, 그의 수하인 또는 대리인에게 제공하거나 전송해야 함

- 일반적으로 정산 통지는 수입자 정보를 위해 세관 관보에 전자적으로 게시된 날짜로 지정되며 이것을 정산의 법적 증거로 간주함¹⁷⁶⁾
- 정산 통지는 게시일로부터 최소 15개월 동안 CBP에 보관됨¹⁷⁷⁾

□ 정산으로 인한 관세, 수수료, 세금 및 이자 총액과 최초 정산 시 평가된 관세, 수수료, 세금 및 이자의 총액 사이에 20달러 미만의 차액이 발생할 시 차액을 무시하고 납세 신고에 따라 정산할 수 있음¹⁷⁸⁾

- 최초 정산 관세, 수수료, 세금 및 이자가 총 예상 관세, 수수료 그리고 보증금 또는 재정산으로 평가된 최종 관세, 수수료, 세금 그리고 이자에 대해 20달러 혹은 그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액에 대한 청구서 또는 환불 수표가 발행됨
- 단 다음의 경우 20달러 미만의 차액에 대해서도 환급, 추징할 수 있음
 - 수입의 이의제기를 통한 재정산으로 발생한 20달러 미만의 차액은 환급할 수 있음
 -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른 재정산으로 발생한 20달러 미만의 차액은 추징 또는 환급할 수 있음

2) 정산 사후 절차

□ 정산 후 180일 이내에 수입자, 관세사 또는 변호사는 항의를 통해 수입 물품과 관련된 CBP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세관의 자발적 정산, 정산, 재정산을 비롯한 모든 세관의 결정, 사무상의 오류, 사실의 오류 또는 오류 또는 다른 부주의로 발생한 물품의 평가액, 품목분류 및 관세율, 관세액 등 재무장관이 징수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176) 19 C.F.R 159.9(c)(1)

177) 19 C.F.R 159.9(c)(1)

178) 19 C.F.R 159.6

- 미국은 정산 후 납부 기한까지 정산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이자가 발생하며 정산 후 발견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 및 과실 여부에 따라 미국 「관세법」 제1592조에 따른 민사적 제재(Civil Penalty)가 적용됨¹⁷⁹⁾

가) 정산 이자

- 정산에 따라 결정된 관세, 수수료 및 이자는 발행 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초과금에 대한 환불 또한 정산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¹⁸⁰⁾
 - 30일 내에 정산된 금액이 세관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정산일로부터 전액 납부할 때까지 30일의 기간에 대해 미지급 잔액이 체납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자를 납부해야 함¹⁸¹⁾
 - 실제 지불이 이루어지는 기간 30일 동안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정산 후 추가 관세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관세에 더하여 추정 관세 납부일로부터 정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가 부과됨¹⁸²⁾
 - 이자율은 미국 「내국세법」 제6621조 및 제6622조에 따라 설정된 분기별 이율을 기반으로 하며 연방 관보에 현재 이자율을 게시하고 있음¹⁸³⁾
 - 이자는 연방단기금리(0%)에 3%를 더하여 현재 3%가 적용되고 있음(법인, 비법인 동일)

나) 정산 이자 산정 방법

- 과소 납부의 경우 이자는 수입자가 추정된 관세, 세금, 수수료를 추정 납부하는 날부터

179) 19 U.S.C 1514; CBP, <https://www.cbp.gov/trade/programs-administration/entry-summary/protests>, 검색일자: 2021. 7. 30.

180) 19 U.S.C 1505(d)

181) 19 C.F.R 24.3a(c)

182) 19 C.F.R 24.3a

183) 19 C.F.R 24.3a(c); 미국관보,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1/04/23/2021-08465/quarterly-irs-interest-rates-used-in-calculating-interest-on-overdue-accounts-and-refunds-on-customs>, 검색일자: 2021. 6. 17.

정산일까지 산정됨¹⁸⁴⁾

- 예를 들어 수입자가 1월 1일에 1천달러의 추정된 세액을 납부하고 12월 1일에 정산이 1,500달러로 이루어지는 경우 정산 시 추정 납부일(1월 1일)부터 정산일(12월 1일)까지의 미지급 잔액(500달러)에 대해 이자가 산정됨
- 중간 정산으로 환불이 과도하게 이루어진 경우 중간 정산 시의 환불 금액 및 초기 추정 세액 납부일로부터 최종 정산일까지 미납 금액에 대한 이자가 각각 산정됨¹⁸⁵⁾
 - 예를 들어 수입자가 추정 세액 납부일(1월 1일)에 1천달러를 납부한 후 중간 정산 시 300달러(5월 1일)를 환불받고 최종적으로 1,500달러(12월 1일)로 정산이 되었다면 이자는 과소납부액 및 미납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산정됨
 - 추정 세액 납부일(1월 1일)부터 최종 정산일(12월 1일)까지 발생한 과소 납부된 500달러 및 중간 정산일(5월 1일)부터 정산일(12월 1일)까지 환불된 금액 300달러를 합한 총 800달러에 대해 이자가 산정됨
- 추정 세액 납부 후 미지급 잔액에 대해 정산 전 추가 금액을 납부하여 해당 금액대로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추가 금액 납부일로부터 정산일까지에 대해 이자가 산정됨¹⁸⁶⁾
 - 예를 들어 수입자가 추정 세액납부일(1월 1일)에 1천달러를 최초 납부하고, 200달러(5월 1일)를 추가 납부하여 1,200달러(12월 1일)로 최종 정산된 경우 추정 세액 납부일(1월 1일)부터 추가 납부일(5월 1일)까지 지불한 원금 200달러에 대한 이자가 산정됨
- 추정 세액 납부 후 미지급 잔액에 대해 정산 전 추가 금액을 납부하였음에도 최종 정산액 보다 적은 것으로 결정된 경우 나머지 미지급 잔액 및 추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각각 이자가 산정됨¹⁸⁷⁾

184) 19 C.F.R 24.3a(B)(2)(i)

185) 19 C.F.R 24.3a(B)(2)(i)(A)

186) 19 C.F.R 24.3a(B)(2)(i)(B)(1)

187) 19 C.F.R 24.3a(B)(2)(i)(B)(2)

- 예를 들어 수입자가 추정 세액 납부일(1월 1일)에 1천달러를 납부한 후 200달러의 추가 금액을 납부하였으나(5월 1일) 1,500달러(12월 1일)로 최종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이자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산정됨
 - 추정 세액 납부일(1월 1일)부터 추가 납부일(5월 1일)까지의 납부한 추가 금액(200달러)에 대해 이자가 산정됨
 - 추정 세액 납부일(1월 1일)부터 최종 정산일(12월 1일)까지의 미지급 잔액(300달러)에 대한 이자가 산정됨
- 정산 전 중간 정산으로 초과 납부 및 초과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각각에 대해 이자가 부과됨 188)
 - 예를 들어 수입자가 추정 세액 납부일(1월 1일)에 1천달러를 납부하고 300달러(5월 1일)에 대해 중간 정산으로 환불이 이루어진 후 900달러(12월 1일)로 최종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이자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산정됨
 - 추정 세액 납부일(1월 1일)로부터 중간 정산 환불일(5월 1일)까지 초과 납부금액(100달러)에 대해 이자가 산정됨
 - 중간 정산으로 환불을 받은 날(5월 1일)부터 최종 정산일(12월 1일)까지 초과 환급금액(200달러)에 대해 이자가 산정됨

나. 민사적 제재

- 미국은 행정질서벌인 민사금 전벌(civil money penalty) 제도가 있으며, 본 제도는 행정상 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제재와 함께 이행확보수단으로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민사절차에 의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의미함¹⁸⁹⁾

188) 19 C.F.R 24.3a(B)(2)(i)(b)(2)

189) 김현희·강문수·나채준,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를 위한 입법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p. 93.

- 민사금 전벌의 개념은 통일적이지 않으며 손해 보전적 요소 및 제재 부과라는 요소가 내제한다는 면에서 가산세 또는 과징금으로¹⁹⁰⁾ 보는 관점과 법체계의 수행 및 운영 현황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¹⁹¹⁾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¹⁹²⁾
 - 이렇게 개념이 통일되지 않은 것은 미국이 법적 개념을 중시하는 법체계가 아니라는 이유도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법적 개념의 구별이 큰 실익이 없다는 실용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¹⁹³⁾
- 민사금 전벌이라는 용어는 확정된 단일한 법적 개념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 법률에서 fine, penalty, forfeiture, civil penalty¹⁹⁴⁾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음
- 미국은 「관세법」상 관세징수 및 통관절차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민사적인 제재(civil penalty)로 민사벌금(civil penalty, monetary penalty),¹⁹⁵⁾ 몰수(forfeiture)에 규정하고 있음¹⁹⁶⁾
 - 미국 「관세법」에서는 민사적인 벌금과 몰수 등 제재에 관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세사범의 고의성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형사적인 제재보다는 주로 민사적인 제재를 활용하는 편임
 - 형사적 제재의 경우 위반자의 고의가 비교적 명백하고 사안이 중요한 경우에 대해 적용된다고 함

190) 김용재, 「미국관세법상 민사금전벌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제51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p. 485.

191) 불법이익 환수 또는 영업정지 대체의 금전적 제재로 행정청에 의해 부과되나 불복 시 행정소송의 절차에 따름

192) 김현희 외 2인(2017), p. 93.

193) 김현희 외 2인(2017), p. 94.

194) 류지민, 「조세 개념의 한계에 대한 소고(小考) - 미국 연방대법원 NFIBv.Sebelius의 조세·금전벌 구별 쟁점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세법학회, 2017, p. 32.

195) 형법에 부과되는 벌금과 구분하기 위하여 미국의 「관세법」상 부과되는 벌금에 대해서는 민사벌금으로 통칭하였음

196) 19 U.S.C 1592(c); 김성문, 「미국의 통관절차 및 관세형벌」, 『2012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27집, 2012, p. 40; p. 44; p. 45.

- 정산 후 발견되는 탈세에 관해서는 미국 「관세법」 제1592조 상업적 사기 과실에 따라 민사벌금이 부과됨¹⁹⁷⁾
- 미국은 민사적 제재는 죄의 경중에 따라 사기(fraud), 중과실(gross negligence) 또는 과실(negligence)로 분류됨
- 관세나 세금 또는 수수료를 포탈하였거나 포탈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사기, 중과실, 과실에 따라 처벌함¹⁹⁸⁾
 - 다음의 내용으로 미국 상업 시장에 물품을 반입, 기도하는 행위 및 이러한 위반행위를 하도록 타인을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 중요 사항에 관하여 허위 내용의 서류나 전자적인 데이터나 정보의 전송, 허위 서면이나 구두의 진술, 실질적 행위, 실질적 누락으로 미국의 상업시장에 물품을 반입하려는 행위
 - 다만 사무상의 오류나 사실상의 오인, 전자 시스템에서 초기 사무 오류를 단순히 비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과실의 행위적 유형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함
 - 사기: 인지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위반을 이행하였다면 물품의 국내가격 이하의 민사벌금이 부과됨
 - 중과실: 규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알고 있었으나 무시, 무관심으로 인하여 위반한 경우 다음의 민사벌금이 부과됨
 - 해당 물품의 국내가격 또는 위반행위로 포탈했거나 포탈할 가능성이 있는 관세, 세금, 수수료의 4배 중 적은 금액 이하의 민사벌금이 부과됨
 - 그 위반이 관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그 물품에 부과될 관세, 세금, 수수료의 100분의 40 이하의 민사벌금이 부과됨

197) 한국관세학회, 『기업의 심사부담 완화를 위한 납부세액 정산제도 등 도입방안 연구』, 관세청, 2008. 12, pp. 60~64; 김태인, 「미국 납부세액정산제도의 분석 및 도입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4권 제3호, 2008, p. 108.

198) 19 U.S.C 1592(c); 김성문(2012), p. 40.

- 과실: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지 못하여 위반한 경우 다음의 민사벌금이 부과됨
 - 해당 물품의 국내 가격 또는 그러한 행위로 포탈했거나 포탈할 가능성이 있는 관세, 세금, 수수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이하의 민사벌금
 - 그 위반이 관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그 물품에 부과될 관세, 세금, 수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민사벌금이 부과됨
- 세관장은 민사벌금을 고지하기 전에 서면으로 수입자에게 사전통지서(Pre-penalty notice)를 발행해야 하며 수입자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세관장에게 상기의 민사벌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¹⁹⁹⁾
 - 또한 수입자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세관장에게 감면청원서(petition for mitigation)를 제출할 수 있음
 - 수입자는 위와 같은 감면청구에 관한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다시 추가 감면 감면청원서를 세관에 제출할 수 있는데, 추가 감면청원에 대한 세관이 결정에 대하여 수입자가 다시 불복할 경우 민사벌금에 대한 징수 업무는 법무부의 연방검사에게 이관됨
- 세관의 정식조사 착수 전 또는 세관이 정식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규정을 위반하게 된 정황들을 자진신고 시, 위반에 관련된 물품은 압류되지 않고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벌금도 감경되어 다음을 초과하지 않음²⁰⁰⁾
 - 사기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후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다음의 민사벌금이 부과됨
 - 미납된 관세를 세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세관이 납부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한다면, 포탈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민사벌금이 적용됨

199) US CBP, *What every member of the trade community should know about : Customs administrative enforcement process : Fines, Penalties, Forfeitures and Liquidated Damages*, 2004, pp. 26~27.

200) 19 U.S.C 1592(c)(4)

- 만약 그 위반행위가 관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부과될 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민사벌금이 적용됨
- 중과실 또는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를 하고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다음의 민사벌금이 적용됨
 - 위반자가 세관으로부터 미납된 관세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할 시, 그 관세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의 민사벌금이 적용되며 이자는 미국 「내국세법」 제6621조에 따라 부과됨

다. 벌칙

- 미국은 미국 「관세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벌금, 몰수, 징역)에 대해 미국 「형법」(18 U.S.C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제541조에서부터 제555조까지 규정하고 있음
 - 형벌의 종류와 내용을 규정하는 법규로 미국의 범죄와 형사소송 등에 관한 규정이 편제되어 있음
 - 미국의 경우 형법총칙을 배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관세 관련 형벌의 경우에도 미국 「형법」, 그리고 이에 대한 일반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
- 미국의 「형법」상 징역 1년을 기준으로 중죄(Felony)와 경죄(Misdemeanor)로 분류하고 있으며 관세 관련 처벌 내용에는 본 법의 처벌 구분이 적용됨
- 중죄의 경우 형량에 따라 Class A부터 Class E까지 5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단계에 따라 최소 1년 이상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되고 있음²⁰¹⁾
 - Class A: 무기징역 또는 사형
 - Class B: 25년 이상의 징역
 - Class C: 10년 이상에서부터 25년 미만의 징역

201) 18. U.S.C 3559(a)(1)~(5)

- Class D: 5년 이상에서부터 10년 미만의 징역
- Class E: 5년 미만의 징역

□ 경죄의 경우 개인과 법인에 대해 벌금의 차이가 있으며 벌금형일 경우 경죄의 종류에 따라 벌금액이 차등 적용됨

〈표 III-1〉 미국 「형법」상 경죄에 대한 벌금

구분	형량	개인 벌금	법인 벌금
경죄이나 사망에 이른 경우		25만달러 이하의 벌금	50만달러 이하의 벌금
Class A	6개월 초과 1년 미만의 징역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10만달러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20만달러 이하의 벌금
Class B	30일 초과 6개월 이하 징역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5천달러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1만달러 이하의 벌금
Class C	5일 초과 30일 이하의 징역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5천달러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1만달러 이하의 벌금

자료: 18 U.S.C 3571(a)~(c)

- 「형법」 제541조~제5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범 처벌의 경우 대부분 징역형(imprisonment) 및 벌금형(fine)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형법」 제541조~제555조 중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관세범 처벌 규정인 제541조, 제542조, 제543조, 제545조, 제550조 제551조를 살펴보았음
 - 미국의 경우 미수범의 경우 「형법」 제552조, 제545조, 제546조, 제553조, 제554조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으며 신고 및 납부 위반과 관련된 관세형벌 중 미수범에 대해서만 기수범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음

- 예비 및 방조의 경우, 별도 처벌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한국의 특수가중 처벌법과 같은 별도의 가중처벌 법이 존재하지 않음
- 「형법」 제541조~제5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신고 및 납부 위반과 관련된 형벌은 다음과 같음
 - 허위 분류된 물품의 수입(제541조)
 - 허위 진술에 의한 물품의 통관(제542조)
 - 정당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의 수입(제543조)
 - 미국으로의 물품 밀수(제545조)
 - 허위의 관세 환급 청구(제550조)
 - 송장 등 기타 서류의 은닉 또는 파기(제551조)
- (허위 분류된 물품의 수입) 허위로 분류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할 수 있음²⁰²⁾
 - 고의로 물품의 실제 중량 또는 측정치 미만으로 수입하거나 품질 또는 가치에 대한 잘못된 분류로 인하여 법적으로 지불해야하는 관세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는 등 관세 납부 의무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해당 형벌이 적용됨
- (허위 진술에 의한 물품의 통관) 허위로 작성한 문서 또는 허위 진술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할 수 있음²⁰³⁾
 - 허위 청구서, 신고서, 상업송장, 진술서, 편지, 서면 또는 구두로 허위 진술을 통해 물품을 반입 또는 소개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허위 또는 사기로 인해 해당 형벌이 적용됨
- (정당한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물품의 수입) 정당한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할 수 있으며

202) 18 U.S.C 541

203) 18 U.S.C 542

공무원의 경우 직위가 해제됨²⁰⁴⁾

- 합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물품을 고의로 수입하는 경우 해당 형벌이 적용됨

- (미국으로의 물품 밀수) 물품을 미국으로 밀수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할 수 있으며 미국으로 밀수된 물품은 몰수됨²⁰⁵⁾
 - 고의로 밀수하거나 비밀리에 미국에 밀수하거나 밀수하려고 시도하거나 송장 또는 패스, 문서 등을 위조 또는 거짓, 기타 방법으로 세관을 통과하려고 시도한 경우
 - 사기 또는 고의로 미국에 법에 위배되는 물품을 수입 또는 반입
 - 수입 후 그러한 물품의 운송, 은닉 또는 판매를 촉진하는 사람에 의해 법에 반하여 미국으로 수입 또는 반입된 경우

- (허위의 관세 환급 청구) 허위로 관세 환급을 청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하며 위반과 관련된 물품이나 이익은 몰수됨²⁰⁶⁾
 - 상품의 수출과 관련된 세금의 환급, 지원금 등을 받기 위하여 허위나 기망적인 청구를 하였거나 자신이나 타인이 법률상 허가된 금액보다 더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서나 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게 해당 형벌이 적용됨

- (송장 등 기타서류의 은닉 또는 파기) 세관의 징수를 위한 심사 관련 서류를 은닉 또는 파기한 경우 2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함²⁰⁷⁾
 - 세관 징수관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조사와 관련된 수입물품의 송장이나 서류를 의도적으로 은닉하거나 폐기한 경우
 - 시기에 제한 없이 사기행위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수입물품과 관련된 송장이나 서류를 폐기한 경우

204) 18 U.S.C 543

205) 18 U.S.C 545

206) 18 U.S.C 550

207) 18 U.S.C 551

4. 캐나다

가. 과태료

- 캐나다는 「관세법」(Customs Act, 이하 「관세법」)에 제6장 이행(Enforcement)에서 「관세법」의 불이행과 관련한 벌금 및 이자(Penalty and Interest) 부과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 제109.1조에서 「관세법」 및 「관세율법」(Customs Tariff Act, 이하 「관세율법」)에 따라 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2만 5천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규정함
 - 「관세법」 제109.5조에서 통지일로부터 30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벌금에 대해 규정된 이자를 부과하도록 함
- 캐나다는 본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 벌금 시스템(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y System, 이하 AMPS)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²⁰⁸⁾
 - 관세 관련 법률, 규정, 정책, 절차의 이행에 대한 지침으로 D memoranda를 두고 있으며 D22의 Memorandum D22-1-1에서 「관세법」, 「관세율법」, 기타 관련 규정 등의 위반에 대해에 따른 AMPS 과태료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²⁰⁹⁾
- 따라서 AMPS상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위반 내용 및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살펴보았음

1) AMPS

- AMPS는 국경 및 무역 관련 위반과 관련하여 수입자, 수출업자, 관세사, 창고 및 면세점

208) Memorandum D11-6-4

209) CBSA, <https://www.cbsa-asfc.gc.ca/trade-commerce/amps/menu-eng.html>, 검색일자 2021. 7. 22.

운영자, 운송업자, 화물 운송업자 등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대상에 적용됨²¹⁰⁾

- AMPS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압수와는 반대로 사람의 불이행에 대응하여 적용되므로 과태료 지불이 문제가 될 시 「관세법」의 징수 조항을 사용할 수 있음
- 관세사를 고용하였더라도 관세를 비롯한 제세금의 지불 및 이와 관련한 정보 및 서류의 획득, 전송 등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AMPS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²¹¹⁾
- AMPS는 처벌목적이 아닌 행위 개선을 위한 성격으로 설계되었음²¹²⁾

□ 과태료 지침서(Master Penalty Document, 이하 MPD)는 「관세법」, 관세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된 요건에 대한 위반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각 위반에 대해 위반 내용, 근거 법률, 행정 규정 등에 대한 지침임²¹³⁾

- MPD에서는 위반 사항에 C 및 세 자리 숫자를 표기하여 각종 위반 내용을 분류하고 있음²¹⁴⁾

□ 과태료의 새로운 계산 시점 산정을 위해 각 개별 위반에 대한 12개월 또는 36개월간의 유지 기간을 두고 있음

- 12개월에서 36개월의 유지 기간은 과태료 계산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위반 유지 기간이 만료되고 동일한 위반 사항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위반에 대한 유지 기간을 시작하여 1차 부과 금액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
- 1차 부과 후 동일한 오류에 대해 유지 기간 동안 해당 오류를 시정하지 못했을 시 2차 및 3차 부과가 이루어짐

□ AMPS하에서 단일 위반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태료는 2만 5천캐나다달러이며

210) Memorandum D22-1-1

211) CBSA, <https://www.cbsa-asfc.gc.ca/trade-commerce/amps/menu-eng.html>, 검색일자: 2021. 7. 22.

212) Memorandum D22-1-1

213) Memorandum D22-1-1

214) CBSA, <https://www.cbsa-asfc.gc.ca/trade-commerce/amps/menu-eng.html>, 검색일자 2021. 7. 22.

CBSA는 하나 이상의 단일 위반을 적용하지 않음²¹⁵⁾

- 예를 들어 두 가지 종류의 단일 위반이 발생한 경우 세관원은 이러한 위반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종류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NPA에서 단일 위반에 대한 발생 건이 하나 이상으로 확인되면 과태료는 2만 5천캐나다달러를 초과할 수 있음

□ AMPS는 행위의 유형, 정도, 빈도에 따라 부과되며 동일한 자의 동일한 위반의 반복 발생에 대해 점진적으로 더 높은 액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²¹⁶⁾

- AMPS는 위험에 대한 수준을 네 가지 기준, 즉 국가 안보, 건강 및 안전, 경제, 국제 공약에 따라 매우 낮은 수준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영향의 심각도에 따라 분류하여 과태료를 산정하였음
 - 네 가지의 분류에 맞지 않은 가벼운 경우의 위반에 대해서는 고정비용으로(위반의 단계에 따른 금액 증가 없이) 과태료가 부과됨
- 고위험 및 상당한 고위험으로 간주되는 위반의 경우 위반의 심각성을 반영하기 위해 1차에서 3차 부과로 갈수록 더 높은 비율로 과태료 금액을 인상하고 있음
 - 1차 부과 후 2차 부과 시 1차 부과에 대한 위반 금액의 두 배를, 2차 부과 후 3차 부과 시 2차 위반 금액의 두 배를 납부하도록 함
 - 3차 이후의 부과에 대해서는 3차와 동일한 위반 금액을 납부함
 - 부과 경고 수준에 따라 해당 부과 차시에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0캐나다 달러(고지)에서 8천캐나다달러까지의 범위임

□ AMPS 사용에 관한 정책은 CBSA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처벌의 집행방식 적용에 제한을 두지 않음

- 예를 들어 AMPS 처벌과 함께 특정 상황에서 압류 조치가 시작될 수도 있음
- 여기에는 술, 금지된 무기, 총기, 마약, 아동 포르노, 밀수를 위해 개조 및 사용되는

215) Memorandum D22-1-1

216) Memorandum D22-1-1

운송 수단, 수출이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통제 상품과 같이 물품이 금지되거나 통제되는 경우가 포함됨

- CBSA의 기소를 배제하지 않으며 범죄의 심각성 또는 사회에 잠재적인 피해로 인해 정당한 경우 형사 기소가 계속 진행될 수 있음
- 과태료는 과태료 부과통보(Notice of Penalty Assessment, 이하 NPA)를 통해 고지됨
 - NPA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고지일 다음 날짜부터 규정된 이자율(0.1001%)²¹⁷⁾의 이자가 적용되나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에 대한 이자는 적용되지 않음
- 과태료는 NPA에 따라 위반자가 시정을 요청하거나 연방 법원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음²¹⁸⁾
 - 지정된 담당자는 과태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요청에 따라 CBSA 장관을 대신하여 NPA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과태료를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음
 - 담당자에게 시정 요청이 거부된 경우 해당 내역이 기재된 NPA가 위반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1년까지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²¹⁹⁾
- AMPS에 따라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음²²⁰⁾
 - 관세 미납
 - 보세창고에서 무단으로 물품 반출
 - CBSA통제하의 물품 반출 전 배송
 - CBSA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17) 캐나다 국고채 이자율

218) Memorandum D22-1-1

219) Memorandum D22-1-1

220) CBSA, <https://www.cbsa-asfc.gc.ca/trade-commerce/amps/menu-eng.html>, 검색일자: 2021. 7. 22.

- CBSA에 물품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잘못된 신고를 자체 수정하지 못한 경우
-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90일 이내에 수정요청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음²²¹⁾
- 고객번호 오류에 따라 타인에게 부과되어야 할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 1차 부과에 대한 과태료가 취소되었음에도 동일한 사유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된 경우 2차 부과에 대한 과태료가 적용된 경우
 - 부과된 과태료의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 자동적으로 허가되는 물품 반출에 대해 반출 요청 전 허가 받았음을 알리는 경우
 - 업무 시간 외에 다른 장소에서 납부한 경우 납부에 대한 납부고지서(K84)²²²⁾ 문서를 시간 내에 해당 사무소에 제출한 경우
- 다음의 예기치 못한 상황의 경우 과태료 및 이에 대한 이자 면제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²²³⁾
- 화재, 홍수, 지진 또는 통제할 수 없는 서비스 중단을 야기하는 기상이변과 같은 자연 재해 또는 인재
 - 파업, 공장 폐쇄, 폭동, 테러 행위 또는 전쟁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민사 또는 형사 소란 또는 서비스 중단
 - 고객 또는 고객의 준수를 보장하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의 사망 또는 무능력(예: 심각한 질병 또는 사고)
- 다음의 CBSA의 오류가 있을 시 과태료 및 이에 대한 이자 면제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²²⁴⁾

221) CBSA, <https://www.cbsa-asfc.gc.ca/trade-commerce/amps/menu-eng.html>, 검색일자: 2021. 7. 5.

222) 미납세액에 대해 기록된 고지서(Memorandum D17-1-5)

223) Memorandum D11-6-4, Memorandum D17-1-5

224) Memorandum D11-6-4, Memorandum D17-1-5

- CBSA 웹사이트를 포함한 CBSA 간행물의 오류
 - CBSA의 잘못된 서면 조언 또는 정보
 - 특정 CBSA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오작동 또는 통신 중단으로 인해 고객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에 전송할 수 없는 경우
 - 수입 정보의 처리 또는 후속 조정 시 CBSA 오류 또는 상당한 지연
- 캐나다는 과태료에 대해 과태료 재투자정책(Penalty Reinvestment Agreement, PRA)에 따라 벌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자사의 상업 정보 시스템(Commercial Information System, CIS) 또는 관련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인 문제의 결과로 벌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하고, 적시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시정 조치가 준수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임을 입증한 경우 적용됨
 - 고객이 「관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행정적 금전적 처벌을 초래한 근본적인 시스템 문제의 수정에 투자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 다만 다음의 경우 PRA를 신청할 수 없음
- 금지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물품 관련된 위반의 결과로 처벌을 받은 경우
 - 「관세법」이 아닌 「의회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예: 「농업 및 농식품 행정 과태료법」, Agriculture and Agri-Food 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ies Act)
 - PRA의 대상이 되는 벌금 외에 CBSA에 지불해야 하는 미지급 부채가 있는 경우

2) 신고 및 납부 관련 과태료²²⁵⁾

- (미신고 C 070) 수입자 또는 소유자가 수입품에 대해 납세신고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됨

225) CBSA, <https://www.cbsa-asfc.gc.ca/trade-commerce/amps/mpd-dmi-eng.html>, 검색일자: 2021. 7. 21.

- 과태료는 사례별료(Per instance, 이하 사례당) 송장/문서(per invoice/document)에 따라 부과되며 1차 부과 시 발생한 건의 경우 1,200캐나다달러가 부과됨
 - 2차 부과, 3차 부과 및 그 후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각각 2,400캐나다달러, 4,800캐나다달러의 과태료가 적용됨
 - 2차 부과, 3차 부과 및 그 후 발생한 건에 대한 과태료는 36개월의 유지기간 동안 동일한 오류를 수정하지 않았을 시 부과됨
- (허위 신고 C 360) 수입자가 물품에 대해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됨
- 1차 부과 시 2천캐나다달러의 과태료가 선적당 부과되며 2차 부과 시 4천캐나다달러, 3차 부과 시 6천캐나다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됨
 - 2차 부과, 3차 부과 및 그 후 부과되는 과태료는 동일한 오류를 36개월의 유지기간 동안 수정하지 않았을 시 부과됨
- 허위 신고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100대의 텔레비전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조사 결과 선적물에 텔레비전 100대 및 자전서 10대가 들어있음을 발견한 경우(추가 물품 발견)
 - 100대의 텔레비전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조사 결과 선적물에 100대의 컴퓨터가 들어있음을 발견한 경우(허위 물품 발견)
 - 100대의 텔레비전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조사 결과 선적물에 150대의 텔레비전이 있는 경우(수량 오류)
- (수정신고 미이행 C 083) 납세자가 납세 후 납세신고상 오류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reason to believe)를 가지고 90일간 자율조정(self-adjustment) 절차를 거쳐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 과태료가 부과됨
- 조정을 위한 90일의 기간은 수입자가 신고가 정확하지 않다는 특정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 날짜부터 시작됨

- 수입업자는 법률에 규정된 90일 서류 제출 기간 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 및/또는 동일한 문제 물품에 대한 수정 사항을 제출해야 함
- SOTC(Senior Officer Trade Compliance)는 감사, 검사, 검증 등에 의해 재발견 될 수 있는 오류와 최초 발견된 오류를 구분하기 위해 해당 오류에 대한 믿을 만한 사유의 구성 여부에 대해 보고서에 자세히 기록해야 함
- 납세신고의 오류로 믿을 만한 사유는 다음과 같음²²⁶⁾
 - (a) 원초적이며 명백하고 자명한 특정 조항과 같은 입법 조항에 대한 오류
(예: 관세평가 항목 중 포장비용)
 - (b) 결정(간주 결정 제외), 재결정, 추가 재결정 등과 같은 수입 상품과 관련하여 CBSA가 수입자에게 발행한 공식 평가 문서
 - (c) 수입자가 항소인, 피고인 또는 중재인이었던 최종 재판소 또는 법원 결정
 - (d) 수출업자, 공급업체, 제조업체 또는 생산자 등으로부터 수신한 정보
(예: 수입물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산 자재 등 변경)
 - (e) CBSA로부터 수입업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서면 통신의 오류(예: 「관세법」 제43.1조에 따른 사전 심사 문서 또는 무역 준수 검증 최종 보고서)
 - (f) 수입자가 시작한 내부 감사 또는 검토 또는 수입 회사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수행하는 외부 회사의 최종 보고서에 따른 오류
- (a)의 사례에 한하여 해당 B3(캐나다 수입신고서, Canada Customs Coding Form)에 오류가 발생하는 빈도와 상관없이 항목당(Per Issue, 이하 항목) 최소 500캐나다 달러에서 최대 5천캐나다달러의 과태료가 1회 적용됨
 - 무역 준수 검증 최종 보고서 수령 후 90일 내에 오류를 수정하지 않을 시 재평가 기간 동안 발생한 오류의 신고서당(Per occurrence, 이하 신고서) 최소 500캐나다 달러에서 최대 2만 5천캐나다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됨

226) Memorandum D11-6-6 및 C 083

- (b)-(f)의 사례에 대해서는 오류의 인지 후 90일 이내에 수정하지 않을 시 신고서당 최소 500캐나다달러에서 최대 2만 5천캐나다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됨
 - 2차 부과, 3차 부과 및 그 후 발생한 건에 대한 과태료는 동일한 오류를 36개월의 유지기간 내에 시정하지 못했을 시 부과됨
 - 2차 부과 시 신고서당 최소 750캐나다달러에서 최대 20만캐나다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차 및 그 후 부과 시 신고서당 최소 1,500캐나다달러에서 최대 40만캐나다달러 과태료가 부과됨

- 수정신고가 자기공개(voluntarily disclosure)로 받아들여진 경우 적용된 조치를 취하하고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음²²⁷⁾
 - 동일한 규정 준수 문제에 대해 이전에 자발적 공개가 허용된 경우 자발적 공개가 거부될 수 있으며 CBSA에 불이행의 발생, 시정에 대해 설명해야 자발적 공개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자발적 공개로 형사 기소가 금지되지 않으며 수입 상품에 부과되는 해당 관세 및 세금 또는 기타 정부 부처(OGD)에서 부과하는 기타 벌금이 면제되지 않음
 - CBSA가 무역 준수성에 대한 검증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검증 통지서 발행 전 수정이 이루어져야 함

- (세관 경정 C 353) 「관세법」 제32.2조 제2항(b)에 의거한 세관경정에 따른 과태료의 경우 「관세법」 제32.2조 제2항(a)의 위반(C 083)과 오류로 믿을 만한 사유, 과태료 부과 방법, 과태료 부과 금액, 보존기간이 동일함

나. 벌칙

- 캐나다는 형법에 대해 배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에 대한 규정이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227) Memorandum D11-6-4

- 캐나다는 「관세법」 제153조~제163조에서 「관세법」에 대한 금지, 위반과 이에 대한 처벌(Prohibitions, Offences and Punishment)을 규정하고 있음
- 제160조에서는 「관세법」 전체적인 규정의 일반적인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형과 수준에 따라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 제160(1)에 따라 (a) 약식기소(Summary conviction)에 의해 처벌해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형량이 부과됨
 - 5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fine)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이 동시에 부과됨
 - 「관세법」 제160(1)에 따라 (b) 기소범죄(Indictable offence)에 의해 처벌해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형량이 부과됨
 - 50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이 동시에 부과됨
- 「관세법」 제160조 이외의 법을 위반했을 시 약식기소 또는 1천캐나다달러 이상 2만 5천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함
- 「관세법」 제160(1)에 따라 「관세법」 위반에 대해 처벌 받는 행위 중²²⁸⁾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관세법」 제153조에 따른 거짓진술, 관세포탈 「관세법」 제159조에 따른 밀수에 대해 살펴보았음
- (거짓진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작성된 진술 또는 답변에서 허위 또는 기만적인 진술을 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데 동의 또는 참여하는 경우 처벌됨

228) 행위자(제11조), 수입물품의 보고(제12조) 수입물품 제출 및 질문에 답할 의무(제13조), 불법적으로 수입된 물품보고(제15조), 수입으로 간주되는 난파선(제16조), 물품의 이동(제20조 제1항), 반출(제31조), 제40조(기록), 제43(2) 기록의무, 수출과 관련된 보고(제95조 제1,3항), 물품의 유치 조건(제103조 제3항), 통관정보 및 조항의 사용(제107도 제2항), 거짓진술, 관세회피(제153조), 불법적으로 수입된 물품의 보관, 획득, 제거(제155조), 서식의 소유(제156조), 밀수(제159조), 물품의 표시위반(제159.1조), 통관정보보호방법(제107조 제11항) 등

- 「관세법」 제43.1항에 따른 사전 심사 또는 「관세법」 제97.1항에 원산지 증명서에 거짓 또는 기만적인 진술을 하거나 이에 참여하거나 그 작성을 묵인하지 않는 경우
 - 기록 또는 회계 장부를 파기, 변경, 절단, 은닉 또는 처분
 - 기록 또는 회계 장부에서 특정 자료의 누락 또는 누락에 동의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행위
 - 어떤 방식으로든 고의적으로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본 법에 따른 관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 관세 포탈의 경우 시도(attempt)하는 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 (밀수) 모든 사람은 캐나다로 밀수하거나 밀수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 은밀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게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이나 본법 또는 다른 의회 법률에 따라 수입이 금지, 통제 또는 규제되는 물품을 밀수하는 행위를 저지를 시 처벌됨

5. 독일

가. 가산세제도²²⁹⁾

- 독일의 가산세제도는 국세에 관한 일반법인 독일 「국세기본법(Abgabenordnung, AO, 이하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본법에 의거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국세기본법」 제3조에서 UCC(Union Customs Code)의 제5조 제20항 및 제21항에 따른 수출입 관세 또한 본 법에서 규정하는 세금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가산세 이외에 각 개별 세법에서 별도로 부과되는 가산세는 없음

229) 김유찬·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10, pp. 424~427; 한상국 외, 『주요국의 가산세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6. 8, pp. 27~30.

- 독일의 「국세기본법」에서는 가산세의 한도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1) 신고 불성실

- 일정 연도 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과 관련된 납세 신고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²³⁰⁾
-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지연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²³¹⁾ 신고 금액이 0인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²³²⁾
 -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대리인 또는 보좌관의 과실인 경우 그 과실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에게 귀속됨
 - 복수의 사람이 납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기관 재량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사람 중 한 명에게 가산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²³³⁾
- 납세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납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반올림하여 최대 2만 5천유로를²³⁴⁾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음
- 가산세는 월별 평가 세액 또는 연체된 월 일부에 대한 확정 세액의 0.25%가 부과되며 월별 또는 연체월의 일부에 대해 최소 10유로가 부과됨²³⁵⁾
 - 가산세는 세금 평가 통지서, 관세액 통지서 또는 세금 분할 통지서 발행을 통해 부과됨²³⁶⁾

230) 독일 「국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

231) 독일 「국세기본법」 제152조 제2항

232) 독일 「국세기본법」 제152조 제2항

233) 독일 「국세기본법」 제152조 제4항

234) 독일 「국세기본법」 제152조 제10항

235) 독일 「국세기본법」 제152조 제5항

236) 독일 「국세기본법」 제152조 제12항

- 단 이익을 위해 세금을 회피한 경우 당해 회피한 세액에 대하여 월 0.5%의 이자를 부과하도록 함²³⁷⁾
 - 이자 기간은 세금 회피가 발생했거나, 조세상의 이익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종료함
 - 이자는 이자계산의 기산일로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며 시작된 달은 예외로 함

2) 납부불성실

- 납부기한 만료 시까지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때에는 50유로를 삭감한 미납세액에 대해 해당 세액이 납부될 때까지 매월 1%의 가산세를 부과함²³⁸⁾
 - 해당 내용은 상환할 조세환급금과 귀속책임에 의한 채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 그러나 이와 같은 가산세는 세액이 확정되거나 또는 납세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발생하지 않음
 - 또한 조세 또는 조세상환의 확정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해당 처분 시까지 발생한 가산세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음
 - 조세의 부수적인 급부(지급지연 이자, 연체료, 추가요금, UCC에 따른 수출·입 관세)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으며²³⁹⁾ 3일 이내의 연체분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음²⁴⁰⁾
- 공동 채무와 여러 채무(joint and several debt)의 경우, 채무불이행의 각 공동 채무자와 여러 채무자에 대해 연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1인의 연대채무자의 연체에 관한 경우에 발생한 가산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²⁴¹⁾

237) 독일 「국세기본법」 제235조

238) 독일 「국세기본법」 제240조 제1항

239) 독일 「국세기본법」 제240조 제2항

240) 독일 「국세기본법」 제240조 제3항

241) 독일 「국세기본법」 제240조 제4항

나. 벌칙

1) 민사적 제재

- 조세질서위반(관세질서위반)이란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세(관세)질서위반법(Steuer (Zoll)ordnungswidrigkeiten)에게 질서위반금(Bußgeld)²⁴²⁾이 부과되는 위반행위를 의미함²⁴³⁾
 - 질서위반금은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성격의 금전적 제재수단을 의미함²⁴⁴⁾
 - 관세질서위반에 대해서는 조세법에 질서위반금에 대한 규정에 해당 내용이 없는 한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의 제1편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함
 -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에서 질서위반금은 행정청에서 질서위반금 처분에 따라 부과되고 불복할 시 지방법원에서 「형사소송법」(Strafprozeßordnung)에 따라 질서위반금 판결로 처리함
 - 질서위반금 징수에 대한 실효성을 위해 미납할 시 독일은 「형사소송법」상 처벌 절차 규정을 준용하여 형사 법원의 강제구금명령으로 처리하도록 함
- 중과실 조세 감소행위로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대리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국세기본법」 제370조 제1항(조세포탈)에 설명된 행위 중 하나를 과실로 범한 경우²⁴⁵⁾ 최대 5만유로 이하의 질서위반금이 부과됨²⁴⁶⁾
 - 단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대리인이 형사적 절차나 질서위반금 부과 절차가 적용되기

242) 본 질서위반금은 가벼운 탈세 행위에 대한 벌과금으로써 본질적으로 조세에 속하는 가산세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음

243) 독일 「국세기본법」 제377조 제1항

244) 김성돈, 「가칭 질서위반법의 체계와 이른바 질서위반행위의 구조」, 『법조』, 제53권 제10호, 통권 제577호, 한국법조협회, 2004, p. 5.

245) 독일 「국세기본법」 제378조 제1항

246) 독일 「국세기본법」 제378조 제2항

전에 허위나 불충분한 진술에 대해 세무관청에 해당 내용을 추후 정정 및 보충하거나 새롭게 진술 또는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 부과하지 않음²⁴⁷⁾

2) 형사적 제재

- 독일은 조세에 관한 통칙법인 「국세기본법」에서 조세범죄(관세범죄)에 대한 벌칙을 다루고 있음
 - 조세 관련 범죄에 관한 형벌 규정: 「국세기본법」 제369조에서 제376조
- 「국세기본법」 벌칙 규정 내에 특정한 경우에 한해, 기본 범죄에 비하여 가중하여 처벌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관세범죄를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는 별도의 법령은 존재하지 않음
- 「국세기본법」에서는 조세(관세)범죄에 대해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²⁴⁸⁾ 「국세기본법」 상의 범죄에 관한 형벌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형법」에 관한 일반법이 조세범죄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²⁴⁹⁾
 - 「국세기본법」하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
 - 불법적인 수출입 행위 및 물품 운반
 - 인지의 위조 또는 위조 준비 행위
 - 첫 번째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범행을 방조하는 행위
 - 다만 「형법(Strafgesetzbuch)」에서는 교사자에 대해 정범에 준해 처벌하고 범죄에 도움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정범의 처벌을 기본으로 하되 형이 감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²⁵⁰⁾

247) 독일 「국세기본법」 제378조 제3항

248) 독일 「국세기본법」 제369조 제1항

249) 독일 「국세기본법」 제369조 제2항

250) 독일 「형법」 제27조

가) 조세포탈죄

- 다음의 세 가지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²⁵¹⁾
 - 세 가지 행위는 ① 세무관서 또는 다른 기관에 부정확하거나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② 세관당국에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에 대해 이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③ 납세필인지 혹은 납세증지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됨
- 조세포탈의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전부 또는 일부가 적법하게 확정되지 않는 경우 탈루된 것으로 간주함²⁵²⁾
 - 이는 사전 또는 사후 심사 유보하에 확정되거나 또는 사후심사 유보하에 납세신고를 조세확정과 동일하게 보았을 시에도 적용됨
 - 부당하게 부여 또는 부당한 환급 또한 조세상의 이익으로 보며 범죄 관련 조세가 다른 사유로 면제되거나 다른 근거에 따라 조세상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함²⁵³⁾
- 조세포탈죄에 있어서는 미수범도 처벌하며²⁵⁴⁾ 수입, 수출 또는 운송이 금지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음²⁵⁵⁾
 - 단 독일 「형법」에 따라 미수범에 대해서는 실제 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관대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형의 감경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음²⁵⁶⁾
- 특히 중한 범죄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되며 다음의 다섯 가지 사유에 대해 적용함²⁵⁷⁾

251) 독일 「국세기본법」 제370조 제1항

252) 독일 「국세기본법」 제370조 제4항

253) 독일 「국세기본법」 제370조 제4항

254) 독일 「국세기본법」 제370조 제2항

255) 독일 「국세기본법」 제370조 제5항

256) 독일 「형법」 제23조 제2항

257) 독일 「국세기본법」 제370조 제3항

- 대규모의 세금 포탈 또는 세제상 이익
- 공무원 및 EU의 공무원으로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경우
-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는 공무원 및 EU 공무원의 협조를 얻은 경우
- 위조 또는 변조된 영수증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및 부당하게 세제상의 이익을 획득하는 경우
- 제1항부터 제6항은 「범죄현장법(Recht des Tatortes auch für Taten)」에 관계없이 본법의 적용지역 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음²⁵⁸⁾

나)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 세무 관청에 부당하게 또는 불완전하게 한 신고를 수정 또는 보완하거나 불이행한 채무를 추후에 보완한 자는 처벌받지 않음²⁵⁹⁾
 - 자수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모든 조세 범죄행위에 대해 가능하며 최소 지난 10년간 발생한 조세의 모든 범죄행위가 해당됨
- 단 다음의 경우 자진 신고에 따른 처벌을 면제할 수 없음²⁶⁰⁾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외부 감사명령을 받았거나 형사 소송 또는 질서위반금 소송의 개시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 조세범죄 또는 질서위반에 대해 수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한 경우
 - 정정, 보완 또는 사후 진술 시 당해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발각되었고 동시에 탈세범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사려 있는 사안 판단에 따라 발각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음이 명확한 경우
 - 제370조 제1항의 행위에 따라 얻은 부당한 혜택이 행위당 2만 5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258) 독일 「국세기본법」 제370조 제7항

259) 독일 「국세기본법」 제371조 제1항

260) 독일 「국세기본법」 제370조 제2항

다) 영업적·폭력적·집단적 밀수죄

- 특별히 전문적으로 사업성을 가지고 수출입 관련 조세를 포탈하거나 전매규정에 대한 위반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자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됨²⁶¹⁾
 - 죄가 가벼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
-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도 또한 영업적·폭력적·집단적 밀수죄에서 적용하는 형량 및 벌금을 적용함²⁶²⁾
 - 본인 또는 관계인이 총기를 휴대하고 수입 또는 수출 관세를 회피하거나 물품을 불법적으로 수입, 수출 또는 운송하는 자
 - 타인이 저항할 시 폭력 또는 폭력적 위협으로 방해하거나 제압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관계인이 무기나 기타 도구 또는 기구를 휴대하고 수입 또는 수출 관세를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수입, 수출 또는 물품을 운송하는 자
 - 수출입 관련 조세의 포탈 또는 수출금지조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기 위하여 결성한 단체와 함께 당해 범죄를 행한 자
 - 수입 또는 수출 관세를 반복적으로 회피하거나 물품을 불법적으로 수입, 수출 또는 운송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의 회원으로서 당해 범죄를 행한 자
- 본죄와 관련하여서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으며,²⁶³⁾ 제370조 제6항 첫 문장 및 제7항의 내용 또한 동일하게 적용됨²⁶⁴⁾
 - EU의 다른 회원국이 관리하는 수입 또는 수출세와 관련되거나 EFTA 회원국 또는 이와 관련된 국가로 인한 경우에도 위의 내용에 따라 처벌함²⁶⁵⁾

261) 독일 「국세기본법」 제373조 제1항

262) 독일 「국세기본법」 제373조 제2항

263) 독일 「국세기본법」 제373조 제3항

264) 독일 「국세기본법」 제373조 제4항

265) 독일 「국세기본법」 제370조 제6항

- 제1항부터 제6항은 「범죄현장법」에 관계없이 본법의 적용지역 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음²⁶⁶⁾

라) 조세은닉죄(조세장물법)

- 탈세가 발생한 물품을 자신을 위해 또는 제3자를 위해 구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 판매하거나 판매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적용함²⁶⁷⁾
- 본 조는 EU 「관세법」 제5조 제20항 및 제21항에 따른 수출입 관세를 회피했거나 「국세기본법」 제372조 제2항 및 제373조에 따른 물품의 불법 수출입에 대해 적용됨
- 개인이 상업적으로 위반행위를 하거나 범죄 행위를 위해 결정한 단체의 일원이 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됨²⁶⁸⁾
- 죄가 가벼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
- 본 죄와 관련하여서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음²⁶⁹⁾

6. 소결

- 주요국의 법 체계 및 통관절차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가산세 제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었음
- 다만 우리나라의 가산세와 유사한 성격의 가산세 제도가 있는 나라로는 일본 및 독일이 있었음

266) 독일 「국세기본법」 제370조 제7항

267) 독일 「국세기본법」 제374조 제1항

268) 독일 「국세기본법」 제374조 제2항

269) 독일 「국세기본법」 제374조 제3항

- 미국의 경우 별도의 정산절차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직접적인 제도 비교는 어려우나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정산 이후 30일의 기간 동안 납세하지 않을 시 미납된 세액에 대해 이행 강제의 성격으로 이자를 부과하고 있었음
 - 또한 미국은 「관세법」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민사벌금을 판례에 따라 가산세로 해석하기도 하나 부과 시 고의, 과실, 중과실 여부를 인정하는 과태료적 성격도 가지고 있어 납부지연을 제외한 가산세에 대해서는 소결의 비교에서 제외하였음
 - 호주는 납부불성실 및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며 캐나다의 경우 이를 모두 과태료로 처벌하고 있어 소결의 가산세 비교에서 제외하였음
 - 캐나다는 위반자의 행위의 유형, 정도, 빈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며 동일한 자의 동일한 위반의 반복 발생에 대해 점진적으로 더 높은 액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중과실 조세감소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만유로 이하의 질서위반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과태료의 성격으로 소결의 가산세 비교에서는 제외하였음
- 납부 지연의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 일본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은 미납 후 2개월이 지나면 가산세를 중과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납부지연에 대해 부족세액의 3%에 일 0.025%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하고 있음
 - 미국은 납부지연에 대해 정산이 종료된 후 부족세액의 연 3%(일 0.0082%)의 이자를 가산하여 부과하고 있음
 - 독일은 납부지연에 대해 부족세액에서 50유로를 제한 금액의 월 1%를 가산하여 부과하고 있음
 - 일본은 납부지연에 대해 부족세액의 연 7.3%(일 0.02%) 연체세를 가산하여 부과하고 있음
 - 단 미납 2개월 후 연 7.3%의 연체세를 2배로 중과하여 연 14.6%(0.04%)로 부과하고 있었음

- 과소신고의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당한 방법, 미납세액 초과한도, 은폐·가장 여부 등에 따라 중과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과소신고에 대해 부족세액의 10% 및 일 0.025%의 이자를 가산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을 시 부족세액의 40% 및 일 0.025%의 이자를 중과하여 부과하고 있음
 - 일본은 과소신고에 대해 부족세액의 10%를 가산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미납세액이 5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5%를, 은폐·가장한 경우 부족세액 35%를 중과하여 부과하고 있음
 - 그 밖에 독일은 과소신고에 대해 부족세액의 월 0.5% 이자만 가산하여 부과하고 있음

- 무신고의 경우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독일을 제외한 우리나라와 일본은 가산세 중과를, 독일은 가산세의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무신고에 대해 관세액의 20% 및 일 0.025%의 이자를 가산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을 시 부족세액의 40% 및 일 0.025%의 이자를 중과하여 부과하고 있음
 - 일본은 무신고에 대해 관세액의 15%를 가산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미납세액이 5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5%를, 은폐·가장한 경우 부족세액 35%를 중과하여 부과하고 있음
 - 독일은 무신고에 대해 부족세액의 월 25%를 가산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최소 10유로~최대 2만 5천유로의 부과한도를 설정하고 있었음

- 우리나라, 미국, 독일, 일본의 경우 자진신고, 정당한 이유, 타당한 사유, 합리적인 이유 등에 따라 경감 사유가 있을 시 가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 일본과 미국은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 및 민사벌금에 대해 경감할 것을 별도로 규정에 명시하고 있었음

- 관세포탈에 대한 형벌의 경우 허위진술 또는 분류, 정보 누락, 포탈 행위 및 이를 시도하는 행위 등을 요건으로 관세포탈에 대해 형벌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다만, 분류의 체계에 따라 구성요건 및 처벌 수준이 상이하였음
 - 독일은 중한 범죄의 경우 징역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었으며 캐나다의 경우 약식기소 및 기소에 따라 처벌하고 있었음
 - 호주의 경우 60 벌금단위 또는 포탈세액보다 높은 금액의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었음
- 관세포탈의 미수범에 대해서는 미국과 호주를 제외한 우리나라, 캐나다, 독일, 일본 모두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었음
 - 독일의 경우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나 감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 관세포탈의 방조·교사 및 예비범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방조, 교사범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방조범, 호주의 경우 교사범, 일본의 경우 예비범을 인정하고 있었음
 - 우리나라는 방조·교사범의 경우 본죄, 예비범에 대해서는 1/2로 감경하여 처벌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방조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었으나 감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었음
 - 호주의 경우 교사범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본죄에 준하여 처벌함
 - 일본의 경우 예비범만 인정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미국 캐나다는 방조, 교사, 예비범에 대해 처벌하지 않고 있음
- 포탈죄를 면제의 경우 독일 및 호주에서만 자진신고, 자발적 통지 등을 통해 포탈죄를 면제하고 있었음
 - 독일의 경우 신고를 수정 또는 보완하거나 불이행한 채무를 추후에 보완한 경우 관세 포탈죄가 면제됨
 - 호주의 경우 서면의 오류통지를 한 경우 관세포탈 죄를 적용하지 않으며 포탈한 자에 대해 침해통지를 통해 기소 대신 벌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음

〈표 III-2〉 주요국의 가산세 및 벌칙(관세포탈죄)제도 비교

구분				우리나라	일본	호주	미국 ¹⁾	캐나다	독일	
가산세	부과 대상	납부 지연	일반	미납세액 3% +일 0.025%	연 7.3% (일 0.02%)	-	(정산이자(미납세액 3%(연)) (일 0.0082)	-	미납세액-50유로 1%(월)	
			가중	-	미납 2개월 후 연 14.6%	-	-	-	-	
		과소 신고	일반	부족세액 10% +일 0.025%	부족세액 10%	-	(사기: 물품 국내가격 이하 중과실: 물품 국내가격 또는 포탈세액 4배 중 적은 금액 과실: 물품의 국내가격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중 적은 금액) ²⁾	-	부족세액 0.5%(월) (이자세)	
			가중	부당한 방법: 부족세액 40% +일 0.025%	- 50만엔 등 초과: +초과액 5% - 은폐·가장: 부족세액 35%	-		-	-	
		무신고	일반	관세액 20% +일 0.025%	관세액 15%	-		-	관세액 25%(월) (최소 10유로-최대 2만 5천유로)	
			가중	부당한 방법: 부족세액 40% +일 0.025%	- 50만엔 초과: +초과액 5% - 은폐·가장: 부족세액 35%	-		-	-	
		경감사유			정당한 사유 등	자진신고, 정당한 사유 등	-	자진신고	-	타당한 사유

〈표 III-2〉의 계속

구분		우리나라	일본	호주	미국 ¹⁾	캐나다	독일
관세 포탈죄	구성요건	- 과세가격 등 거짓·누락 신고 - 거짓 품목분류 사전심사	허위·부정한 행위	- 허위·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 허위·오해의 소지가 있도 록 내용 생략	- 허위 분류 - 허위 진술	- 거짓진술 - 「관세법」 위반에 따른 관세 포탈 및 포탈행위의 시도	- 부정확, 불확실한 정보 제공, - 중요사실 미통지 - 납세필인지 또는 증지의 미발행
	처벌내용	3년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10년 징역 또는 천만엔 이하 벌금	60벌금단위 또는 포탈세액보다 높은 금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또는 양자 병과	- 약식기소: 5만 캐나다달러이 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 병과 - 기소: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 병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중한 범죄 가중처벌: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미수범	본죄	본죄	-	-	본죄	본죄 (감경 가능)
	방조·교사	본죄	-	교사범: 본죄	-	-	방조범: 본죄 (감경 가능)
	예비범	1/2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 벌금	-			-
	경감사유	-	-	- 침해통지 - 자발적 통지	-	-	자진신고에 따른 정정 및 보완

주:1) 정산절차로 인하여 납부세액 확정 시점이 다른 주요국들과 다르므로 정산 후를 세액확정 시점으로 보고 유사한 내용을 기술

2) 민사적 제재에 대해 가산세, 과징금, 과태료에 대해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으며 사례에 따라 가산세로 해석할 여지 존재
자료: 저자 작성

IV. 개선방안 및 시사점

1. 자발적 시정 유도

가.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 유도

-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불성실한 신고 및 납부에 대해 가산세 및 조세포탈 처벌 규정 내에 자진신고 시 이를 경감 또는 면제하는 규정을 두어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고 있었음
 - 미국의 경우 정산 시점까지 자발적으로 모든 세금을 납부한다면 별도의 이자, 민사 벌금 등이 부과되지 않으며 「관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민사벌금의 경우 자진신고 시 일정액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며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경감됨
 - 캐나다의 경우 불성실한 신고 및 납부에 대해 과태료로 처리하고 있으나 수정신고 시 이를 자발적 공개로 받아들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구제 지침을 두고 있음
 - 독일 및 호주의 경우 조세포탈에 대한 죄가 있더라도 자진신고 후 정정 및 보완할 경우 그 죄를 면하거나 기소 대신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조세포탈 죄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송 절차에 따라 양형이 가능하므로 가산세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납세자의 주도적인 수정신고의 이행 확립에 보다 효과적일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자진신고에 대해 보정 및 수정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자 및 가산세에 대한 혜택이 해당 제도를 통해 자발적인 시정을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옴²⁷⁰⁾
 - 특히 수정신고의 경우 가산세에 대한 부담으로 세관에서 지적할 시 추후 납부하겠다는 생각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우리나라 「관세법」상 가산세 감면 규정(제42조의2)에서 수정신고 시 가산세의 일부 감면에 대해 규정하지만 그 비율이 자발적 시정의 유인으로 충분한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가산세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²⁷¹⁾
 - 「관세법」상 가산세 감면 규정에 따르면 보정신고 후 6개월 이내의 경우 「관세법」 제42조 제1호(부족세액 10%) 금액의 10%, 6개월 초과인 경우 동일금액의 20%에 대해서만 감면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2008년까지는 보정신고 후 3개월의 기간 동안 가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보정신고 기간이 늘어나며 해당 규정이 폐지되었음²⁷²⁾
 - 또한 해당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의 발생 시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가진 수입자로서는 해석의 문제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²⁷³⁾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례 및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나 그 사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석상의 여지가 있으며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 내용이 없으므로 수입자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인할 근거도 부족한 부분이 있음²⁷⁴⁾

270) 이수진, 「통관제도 및 행정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 입법조사처, 2015. 12. 31., pp. 24~25.

271) 이수진(2015), p. 25.

272) 「관세법」 제38조의 2개정(2008.12.26. 개정)확인 및 정재호 외, 『관세채권확보와 수입자 보호제도에 관한 검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p. 84.

273) ① 과세 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은 경우 ② 사실관계의 부지 또는 오해의 사정이 있거나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는 경우 ③ 과세관청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해석을 변경한 경우 ④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2018. 8. 개정)

274) 윤남현, 「관세법상 가산세 제도에 대한 소고: 관세법 제42조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중심으로」, 『계간

- 따라서 자진신고의 경우에 한해 추정 세금은 징수하되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규정 도입을 검토해 보거나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비율을 보다 높여 성실 납세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세금을 적당히 납부하는 것이 아닌 잘못이 있을 시 시정한다는 납세의식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 자진신고를 통해 납세를 성실히 이행한 수입업체와 그렇지 못한 수입업체 간 가산세 부담에 대해 차이가 크게 날수록 성실 납세에 대한 유인이 커질 것임

나. 수입세액정산제도의 적용 범위 검토

- 미국의 경우 정산제도를 통해 납부세액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스스로 자기가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 미국 정산제도의 경우 초기 세액납부 후 1년 안에 세액을 확정할 수 있어 장기간의 추정 위험이 감소됨
-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개혁 건의를 반영하여 종합심사 기간을 완화(3→5년)하였으나, 대규모 (5년치) 추징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로 기업에서 제도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미국의 정산제도와 유사한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도입하였음²⁷⁵⁾
- 수입세액 정산제도에 따라 기업은 1년 단위로 납부세액 적정성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게 됨
-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이용할 시 ① 관세조사 면제 ② 1년 단위 세액정산 ③ 가산세 경감 ④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²⁷⁶⁾
- 정산보고 결과 조치가 완료된 정산연도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안으로

관세사』 통권 제176호, 한국관세사회, 2015. p. 40.

275) 관세청,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1問 1答」, 2020. 12. 22. p. 1.

276) 최천식 외, 『성실납세 도움 전집 제1권 AEO·세액정산 가이드북』, 관세청, 2020, p. 53.

추가적인 심사를 하지 않음

- 정산보고 결과로 과부족세액이 확정되는 경우 납세자 스스로 보정 및 수정신고 등이 가능하여, 가산세 감경이 가능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됨
 - 관세조사는 세관장이 경정처분을 하므로 가산세는 감경되지 않으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미발행될 수 있음
-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관세행정 협력도가 높고 자율적 법규준수 기반이 갖춰진 AEO기업 중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비AEO기업은 AEO 공인을 획득한 후에 신청이 가능함
-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재화 등을 공급하며 법규준수 의지가 높은 기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입부문 AEO공인심사 신청과 함께 정산신청이 가능함
- 가산세 제도가 납세의무 이행을 독려하고자 하는 보편적인 목적에 기인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기업의 성실신고 및 자발적 법규준수 유도를 목적으로 도입된 수입세액 정산제도의 적용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수입세액 정산제도가 AEO업체(현재 31업체 적용)²⁷⁷⁾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그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일반 수입업체 또한 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다만 세관의 행정력 확보 및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함
- 세관 입장에서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활용할 시 신고납부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²⁷⁸⁾ 1년 단위의 정산을 실시하는 만큼 세관의 인력 투입과 책임성 증가라는 부담이 발생함
 - 수입세액 정산제도의 경우 미국처럼 모든 수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277) 한국관세무역개발원, <https://custra.com/bbs/boardView.do?bbsCode=B405&bbsNo=26323>, 검색일자: 2021. 8. 9.

278) 홍재성·송진구, 「관세법 상 사후세액 심사에서의 가산세에 대한 고찰, 한일 가산세제도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제19권 제4호, 2018, p. 67.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 제도 도입의 실효성 확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함²⁷⁹⁾

- 정산제도는 관세조사와 다른 형태의 조세 부과·징수 방법으로 기업에 자발적 세액 정정기회를 부여하는 수익적 제도이기에 현재는 규제 사무로 분류되지 않음

2. 제재의 차등화

가. 부당가산세와 관세형벌의 관계 정립

- 우리나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중하여 부과함
 - 즉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부족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징수함
- 이는 납세의무자가 부정수단을 사용한 경우 특별히 무거운 부담을 과함으로써 악질적인 납세의무 위반을 방지하고 신고납세제도의 적정한 실현을 확보하기 위함임²⁸⁰⁾
 -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임²⁸¹⁾
- 또한 「관세법」에서는 가산세 이외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감면·환급받은 자에게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관세형벌을 가함

279) 『한국관세신문』, 「2020 수입세액 정산기업 발표. 담당 사무관 인터뷰」, 2020. 3. 11., <http://www.kc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2340> 검색일자: 2021. 8. 3.

280) 길용원, 「증가산세제도의 부정행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p. 321.

281) 서울고등법원 2017. 7. 12. 선고 2016누56556 판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인용)

- 다만 관세포탈의 경우 부정한 방법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규정함
- 이러한 부당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관세포탈죄는 모두 신고납세제도의 실현과 성실한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그 적용범위가 중복됨
 - 「관세법」에서는 부당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와 관세포탈죄로 처벌되는 경우를 다른 표현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의미는 중첩되는 것으로 보임
 - 더욱이 부당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당한 방법에 관세의 포탈·감면·환급을 위한 부정한 행위를 명시함으로써 관세포탈죄의 성립요건을 포함함
- 이와 같이 부당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관세포탈죄의 관계는 「관세법」상 명확한 해석이 없어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음
 - 실제로 부당가산세의 부과요건과 관세포탈죄의 성립요건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여 형사사건의 무죄를 근거로 부당가산세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²⁸²⁾
- 이와 관련하여 가산세와 관세형벌의 법적성격상 차이점을 살펴보면 부당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관세포탈죄의 관계 정립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가산세는 관세질서벌의 일종이며, 관세포탈죄는 관세형벌이므로 그 법적 성격에는 차이가 있음
- 우선 관세질서벌의 일종인 가산세는 행정제재이고, 관세형벌은 형사제재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임
 - 가산세는 행정기관이 부과하며, 관세형벌은 원칙적으로 사법기관의 소관임

282) 서울고등법원 2017. 7. 12. 선고 2016누56556 판결의 경우 원고는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받거나 공소제기를 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함

- 따라서 부당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정행위는 관세포탈죄에서보다 더 넓은 뜻으로 운용될 여지가 있음²⁸³⁾
 - 가산세는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의 판단으로 부과되므로 그 부과가 보다 용이하고 효율적임
- 또한 제재의 수준에서 보았을 때 관세형벌과 같은 형사제재는 위반행위자가 받아야 하는 불이익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행정제재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임²⁸⁴⁾
 - 가산세는 금전적 부담만 부과하지만, 「관세법」상 형벌에는 징역 또는 벌금이나 이들이 병과됨
- 이러한 형사제재의 강력성 때문에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이나 처벌의 목적이 행정제재로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행정제재가 우선 고려되어야 함
 - 형사제재는 제재수단 중에 최후에 동원되어야 할 수단이며, 기존의 제재수단이 실효성이 없고 핵심적인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경우 사용될 수 있음²⁸⁵⁾
- 이에 따라 관세형벌은 그 위법성을 가산세와 같은 행정제재를 통해 다스릴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 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음²⁸⁶⁾
 - 궁극적으로 위법 수준이 형벌로 다스릴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로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이와 더불어 관세형벌과 같은 형사제재는 증명의 정도 등 그 부과절차 또한 행정제재인 가산세 보다 엄격하고 까다로움

283) 양인준, 「가산세에 있어서 부정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조세법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세법학회, 2015, p. 29; p. 39.

284) 윤동호, 「행정제재와 형사제재 병과의 이론과 현실」,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p. 198.

285) 윤동호(2006), p. 199.

286) 양인준(2015), p. 40.

- 부당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한 다툼은 민사소송의 규정을 준용하는바 민사소송에서는 확실성에 근접하는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을 요구함²⁸⁷⁾
 - 반면 관세형벌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유죄의 사실이 인정되려면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의 수준을 넘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에 이르러야 함
- 미국 또한 조세포탈과 관련한 형사상 사기와 민사상 사기의 중요한 차이점으로 유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의 정도를 들고 있음²⁸⁸⁾
- 즉 형사상 사기는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한 반면, 민사상 사기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필요로 함
 - 따라서 형사상 탈세의 판결이 유죄가 아닐 때에도 민사상 사기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음
- 이와 같이 가산세와 관세형벌의 성격과 그 성격에 기인한 제재·입증의 수준을 살펴봤을 때 위반의 정도가 더 중한 경우 관세형벌이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함
- 실정법 체계에서는 부당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관세포탈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음²⁸⁹⁾
- 이에 따라 신고납세의무 위반의 위법성에 따라 일반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당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관세포탈죄가 차례로 부과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과 「조세범처벌법」의 부정행위²⁹⁰⁾라는

287) 양인준(2015), pp. 39~40.

288) 천성권, 「미국의 증가산세 제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통권 제45호, 한양법학회, 2014, p. 179.

289) 양인준(2015), p. 39.

290) 「조세범처벌법」 제3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용어를 통일하였음²⁹¹⁾

- 이는 신고의무 위반과 관련한 가산세와 조세형벌의 제도적 차이를 고려하여 과세 관청이 어떤 제재를 부과할지 선택하도록 한 것으로 보임
 -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가산세와 조세포탈의 제재요건에 모두 해당할 수 있으며, 과세 관청은 제재의 수준이나 입증의 정도를 바탕으로 부과할 제재의 종류를 선택하게 됨
- 이와 같은 관계가 정립된다면 관세형벌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부당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같은 과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납세의무자 스스로 인식할 수 있음
 - 이러한 이유로 납세의무자는 성실한 신고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고, 따라서 신고납세 제도의 적절한 실현 확보를 도모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체계 안에서 위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수준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 하여 효과적 이고 효율적인 제재수단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즉 어떠한 위무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를 가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각 제재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해야 함
- 앞서 살펴본 각 제재의 운용의 용이성, 강력성, 입증의 정도, 불이익의 크기 등을 보았을 때 행정제재인 가산세가 행정형벌보다 효율적·효과적인 제재수단으로 보임
 - 가산세는 행정기관의 소관이므로 법원의 개입이 필요 없고, 위반행위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입증이 보다 용이함

-
-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자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의 조작
 -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9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규정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정의는 하고 있지 않으나 동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 규정에서 부정한 행위란 「조세법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이하 이를 부정행위라고 한다고 함으로써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정행위와 동일한 의미임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행정형벌로 처벌받는 경우 처벌 이외의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부수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납세자에게 가혹하고, 그 부담이 큼
- 따라서 가산세와 관세형벌 간의 관계 정립을 위한 체계와 기준 마련 시 관세형벌보다 가산세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세관청이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보다 신속하고 간소한 제재가 이루어짐으로써 제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또한 형벌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가산세와 같은 행정제재의 적용 여부를 우선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이 경우 위반행위의 시정이나 예방을 기대할 수 없을 때에만 형벌을 가하므로 결과적으로 가산세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
- 그러나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와 관세포탈의 관계를 정립한다 하더라도 두 제도가 성격이 다른 제재이므로 병과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세포탈의 죄를 물을 수는 없겠지만,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관세포탈죄와 부당가산세가 함께 처해질 수 있음
 - 우리나라는 판례나 학설에서 모두 행정질서벌인 가산세와 행정형벌인 포탈죄의 병과를 긍정하고 있음
- 이들의 병과가 이중처벌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선 이중의 부담을 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헌법재판소도 제재의 병과를 인정하더라도 지나치게 과잉된 것은 아니 된다는 헌법적 견제원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함²⁹²⁾
- 따라서 납세의무자에게 가혹한 제재가 되지 않도록 부당신고납부가산세와 관세포탈죄의

292)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병과를 조정하는 규정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필요한 경우 여러 제재수단 간의 선택 가능성을 열어 놓되, 그 병과를 금지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였음²⁹³⁾
- 독일은 「질서위반법」에서 질서위반행위와 범죄가 경합되는 경우 형법만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형벌이 과해지지 않는 경우만 질서위반행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음²⁹⁴⁾

□ 한편 무신고가산세의 경우도 가중하여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명시적으로 밀수입죄와의 병과를 규정하고 있어 이중처벌 여부의 검토가 필요함

- 관세액의 40%의 무관세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 처분을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²⁹⁵⁾

□ 본 연구에서는 무신고가산세와 밀수입죄의 병과 문제는 다음 절 규정의 정비에서 살펴 보고자 함

나. 가격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마련

□ 우리나라는 수출입신고 시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기존에는 허위신고죄로 벌금에 처했으나 가격조작행위를 차단·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음²⁹⁶⁾

- 가격조작행위는 중대한 범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벌금과 같은 경미한 처벌로는 실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2013년 「관세법」에 가격조작죄를 신설하여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하는

293)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294) 권형기·박훈(2019), p. 152.

295) 「관세법」 제42조 제3항

296) 박영기(2020), pp. 509~510.

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기존의 허위가격 신고에 대한 처벌규정이었던 제276조 제1항은 삭제하고, 기타 사항에 대한 허위신고의 경우만 허위신고죄로 처벌함

□ 가격조작죄는 관세포탈죄와 달리 수입물품뿐 아니라 수출물품가격을 허위신고한 경우도 적용되며,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는지 고가로 신고하였는지를 불문함

- 관세포탈죄는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저가신고로 면탈한 관세가 있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임

□ 특히 가격조작죄는 무관세물품의 저가 신고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임

- 반면 유관세물품을 저가로 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관세포탈죄만 성립하고 가격조작죄는 성립하지 않음²⁹⁷⁾

□ 이와 같이 무관세물품의 저가신고는 관세형별로 처벌할 수 있지만, 가산세와 같은 행정제재 규정은 「관세법」상 마련하고 있지 않아 가격조작행위의 방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관세청은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0%의 세율로 수입된 항공기부품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가산세의 납세의무를 인정하지 않음²⁹⁸⁾
 - 본 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성립되는 가산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함

□ 이에 따라 가산세의 계산의 기초를 관세액이 아닌 과세표준으로 하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마련되었음

- 가산세를 과세표준의 일정비율로 부과함으로써 본세가 확정되지 않아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것임

297) 박영기(2020), p. 525.

298)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 그러나 유관세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가산세 규정에 이를 편입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여 「관세법」의 개정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 유관세물품의 경우 과세가격이 동일하더라도 관세율에 따라 부족세액이 달라지고, 따라서 가산세도 관세율에 따라 달라짐
 - 반면 무관세물품은 과세가격의 0.8%의 가산세가 적용되면서 8% 미만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유관세물품보다 가산세 부담이 과하다는 문제가 발생함
 - FTA 협정의 확대 등으로 실행세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일률적인 비율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형평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많음
- 따라서 무관세물품의 저가신고에 대한 제재를 관세액에 따라 산출하는 기존의 가산세 규정에 삽입할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에 대한 가산세로 부과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가산세의 종류에 따라서는 본세의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도 있음²⁹⁹⁾
 - 「관세법」에서도 재수출 불이행, 수입신고 지연, 즉시반출신고 이후 수입신고 불이행 등과 같은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즉 가격신고죄가 적용되는 수입·수출·반송신고, 보정신청, 수정신고 규정에 가산세 규정을 신설하여 그 신고 또는 신청을 불성실하게 이행한 행위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물품을 수출·수입·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가격조작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임
- 다만 수출입신고 등을 하는 때에 가격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유관세 물품의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중복되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조정해야 함

299)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 유관세물품의 저가신고의 경우 가격조작죄가 아닌 관세포탈죄만 성립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불성실가격신고가산세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가산세 규정을 신설한다면 무관세물품에 대한 저가신고뿐 아니라 수출입 물품의 가격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제재가 가능함에 따라 더욱 효과적으로 이를 억제·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존에 형벌로만 다스리던 행위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보다 간편한 절차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사전적 예방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임

3. 규정의 정비

가. 납부지연가산세의 용어 정비

- 2020년 「관세법」의 개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관세액에 대한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음
- 납부지연가산세는 기존의 일차가산금과 증가산금,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성됨
 - 납부지연가산세규정은 2목으로 나뉘어, 나목은 기존의 일차가산금이며, 가목의 미납부세액에 대한 이자는 증가산금, 부족세액에 대한 이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임
- 이처럼 기존의 가산금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통합함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따른 부족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이 복잡해짐
- 우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0%가 징수됨
- 납부지연가산세 중 기존의 일차가산금의 경우 또한 부족세액 중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3%가 징수됨

- 반면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증가산금이 통합된 이자로 계산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의 성격이 다름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은 기존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징수됨
 -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또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³⁰⁰⁾ 납부일 까지의 기간은 기존의 증가산금 성격의 가산세임
- 더욱이 이러한 과정에서 가산금의 규정이 일부 변경되어 반영됨에 따라 보정신청 또는 수정 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을 체납한 때에는 기존의 일차가산금이 징수될 수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음
- 보정신청 등에 따른 부족세액을 체납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해 왔으므로 실무적으로 이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법을 엄격히 해석할 경우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의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 지연가산세가 가산된다고 안내하고 있음

300)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하도록 규정함

[그림 IV-1] 보정신청에 따른 납부고지서

납부영수증서[납부자용]					
회계구분	관세청소관 일반회계		납부기한	2020년 11월 13일	
회계년도	2020		발행일자	2020년 11월 12일	
수입징수관 계좌 번호	110288	납부서 번호	(0127) 040-22-20-	납기내 금 액	2,
*수납기관에서는 위의 굵은 선 안의 내용을 즉시 전산입력하여 수입징수관서에 전자문서방식으로 통지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기후 2020.11.14. 금액	3,
수입신고번호	-20-080		수입징수관서 상 호	인천세관	
납 부 자 (대표자)성명 주 소					
관 세	0	교통에너지환경세	0	개별소비세	0
주 세	0	교 육 세	0	부가가치세	2,944,300
농어촌특별세	0	가산세(보정이자)	10,590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2020.11.14.	3,		2020.11.19.	3,	
2020.11.15.	3,		2020.11.20.	3,	
2020.11.16.	3,		2020.11.21.	3,	
2020.11.17.	3,		2020.11.22.	3,	
2020.11.18.	3,		2020.11.23.	3,	
납부시 아래 <안내말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수입징수관			영수일 년 월 일		
<안내말씀>					
1.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은행,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각 은행의 인터넷 뱅킹(세금/공과금)과세 또는 신용카드납부서비스 (www.cardrotax.or.kr 참조, 365일 가능, 납부대행수수료 0.8%(직불카드는 0.7%) 납세자 부담)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납부기한 경과시에는 미납부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최초 납부기한 경과시 3%, 1일 경과시마다 0.025% 추가가산, 추가가산은 고지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5년까지 가산)					
3. 납부일(영수일)에 해당하는 납부할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지서 기재일자 이후 금액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세액을 체납시(위 납부기한내에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세액 전액을 즉시 일괄징수하게 됩니다.					

자료: 저자 내부자료

- 기존 가산금의 규정은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를 부과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개정 「관세법」에서는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기존의 납부기한이라는 용어를 법정납부기한으로 대체하였는데, 법정납부기한이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함
-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 세관장이 성실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월별납부를 승인한 경우: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

□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은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로 제9조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에 해당하지 않음

- 기존의 가산금 규정에서는 납부기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보정신청 또는 수정 신고에 따른 납부기한도 이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었음
- 한편 경정에 따른 부족세액이 발생하면 제39조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므로 경정에 따른 부족세액을 체납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징수 여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에 따른 체납발생 시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부과되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는 성립될 수 없음

- 법정납부기한인 당초 수입신고(납세신고) 수리일 15일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은 이미 완납한 후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이 미납된 상황이기 때문임
 - 즉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없는 상태임

□ 한편 납부지연가산세 중 이자로 계산되는 금액 또한 법정납부기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1일 0.025%의 가산세가 징수됨
 - 미납부세액이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을 말함

- 우선 수정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을 체납한 경우 이자로 계산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과기간별로 그 성격이 다르므로 그 징수에 문제가 없음
 - 이 경우 가산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세액은 미납부세액이 아닌 부족세액이며, 수정 신고에 따라 부족세액은 발생한 상태임
 -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둘 중 하나의 세액만 발생하여도 적용이 가능함
 - 또한 부족세액에 대하여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까지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기간이므로 법정납부기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함
 - 수정신고일 다음날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는 증가산세가 부과됨

- 반면 보정신청에 따라 발생한 부족세액을 체납한 경우 이자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초가 되는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수입신고시 세액을 완납한 경우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없으므로 미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음
 - 부족세액 또한 「관세법」 제42조에서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따른 부족한 관세액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보정신청에 따른 부족세액은 제외하므로 발생하지 않음³⁰¹⁾

- 또한 보정신청에 따른 부족세액에는 기존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지 않으므로 이자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기간의 시작일은 법정납부기한이 아니어야 함
 -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부터 이자율이 적용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도록 규정 되어야만 보정신청에 따른 부족세액을 체납하였을 때 기존의 증가산금만 가산될 수 있음

- 이와 같이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을 체납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없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01) 이는 보정의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않고 보정이자를 징수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보정신청에 따른 부족세액을 체납한 경우 가산금은 부과되는바 이는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기존의 법정납부기한, 미납부세액, 부족세액의 정의가 적정하게 적용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예를 들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보정신청에는 징수되지 않으므로 부족세액을 수정 신고 또는 경정에 따라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였음
 - 또한 기존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당초 수입신고에 따른 납부기한부터 부과되므로 법정납부 기한을 제9조의 납부기한으로 규정함

나. 무신고가산세의 가중사유 정비

- 무신고가산세는 「관세법」에 의해 밀수입죄로 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경우 높은 비율의 가산세가 징수됨
 - 보다 중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중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무신고가산세의 가중규정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달리 관세형벌이 처해진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여러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된 경우가 아니라 부당한 방법에 의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수됨
- 우선 가산세와 관세형벌이 병과된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중처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질서별인 가산세와 형벌이 병과되어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처벌이 과중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가산세와 관세형벌의 성격을 살펴보았을 때 강력한 제재수단인 관세형벌이 보다 심각한 의무위반에 부과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없는 규정으로 보임

- 밀수입죄에 이를 정도의 의무위반은 아니어도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가산세가 가중될 수 있어야 하지만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이는 불가능함
- 하지만 이러한 논란도 밀수입죄로 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며, 따라서 이들이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무신고가산세는 관세의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확정돼야 성립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먼저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 또는 점유한다면 해당 물품은 몰수되며,³⁰²⁾ 이때에 관세의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않음
 - 「관세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은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않음³⁰³⁾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³⁰⁴⁾ 이 경우 관세는 징수됨
 -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를 하고 반입한 외국물품
 -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른 폐기물
- 밀수입죄의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 또는 점유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알고 밀수품을 취득한 자는 밀수품취득죄로 처벌되는데, 이 경우도 밀수품은 몰수됨³⁰⁵⁾
 - 따라서 이 경우도 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음
- 반면 밀수품을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한 경우 밀수품을 몰수할 수 없어 밀수입죄의

302) 「관세법」 제282조 제2항

303) 「관세법」 제240조 제1항 제3호

304) 「관세법」 제282조 제2항

305)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법인에게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을 하며,³⁰⁶⁾ 이때도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음

- 「관세법」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은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않음³⁰⁷⁾

- 또한 밀수입죄로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역시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은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음³⁰⁸⁾

- 따라서 이 경우도 관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음

- 이와 같이 무신고가산세는 밀수입죄로 처벌 또는 통고처분 받으면 보세구역 반입신고를 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징수될 수 없음

- 보세구역 반입신고를 하거나 타소장치허가를 받은 경우 물품이 수입신고 없이 반출된다 하더라도 관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³⁰⁹⁾

- 즉 밀수품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는 경우만 무신고가산세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위반의 정도와 제재의 수준이 논란이 될 수 있음

- 어떤 행위가 더 무거운 의무위반에 해당하고, 또 그 정도에 따라 제재수단도 적절히 부과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 우선 보세구역 반입신고를 하거나 타소장치허가를 받은 후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경우와 아무런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경우 위반의 경중을 살펴야 함

- 보세구역 반입신고 등의 경우 적하목록, 물품의 수량 및 가격 등을 신고하므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음

- 그러나 반입신고나 장치허가 후 물품을 밀수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거나 자료를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는 악질적인 의무위반 행위로 볼 수 있음

306) 「관세법」 제282조 제3항

307) 「관세법」 제240조 제1항 제6호

308) 「관세법」 제240조 제1항 제4호

309) 헌법재판소 2004. 3. 25. 2001헌바89 전원재판부

- 또한 무신고가산세의 증가와 밀수 또는 추징 중 어떤 제재가 더 강력한 제재인지도 살펴보아야 함
 - 우리나라의 명목관세율은 8%이므로 일반적으로 무신고가산세가 몰수 또는 추징보다 가벼운 제재로 볼 수 있음
 - 몰수와 추징은 납세의무자에게 물품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전적 손실을 주는 반면, 가산세는 물품가격에 관세율을 곱한 관세액에 기반하여 징수함
 - 하지만 밀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농산물은 대부분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보다 무신고가산세가 더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음

- 이와 같이 몰수 또는 추징을 당하는 경우와 무신고가산세가 과증되는 경우 위반의 정도와 이에 따른 제재의 가혹성을 일관성 있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심각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반대로 가벼운 위반행위에 무거운 처벌이 부과될 수 있음

- 따라서 무신고가산세도 불성실신고납부가산세와 유사하게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가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개정된다면 밀수입죄와 무신고가산세의 병과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이중처벌에 따른 가혹성 논란을 피할 수 있음
 - 또한 밀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도 무신고가산세를 증가할 수 있으며 무신고가산세와 밀수입죄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음

참고문헌

- 관세청,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1問 1答」, 2020. 12. 22.
- 권형기·박훈, 「조세 중심 및 적법절차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방안: 조세의 범위 및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1호, 국회예산정책처, 2020, pp. 133~189.
- _____, 「세법상 행정질서벌과 조세형벌의 중복적용 여부와 그 위헌성 -부당과소신고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재를 중심으로」, 『법조』, 제68권 제5호, 법조협회, 2019, pp. 140~176.
-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 김성문, 「미국의 통관절차 및 관세형벌」, 『2012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27집, 2012.
- 김성돈, 「가칭 질서위반법의 체계와 이른바 질서위반행위의 구조」, 『법조』, 제53권 제10호, 통권 제577호, 한국법조협회, 2004, pp. 5~45.
- 김용재, 「미국판례법상 민사금전벌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제51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pp. 485~523.
- 김유찬·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 김정식·서희열, 『우리나라 가산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연구소, 2010.
- 김태인, 「미국 납부세액정산제도의 분석 및 도입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4권 제3호, 한국무역연구원, 2008, pp. 101~117.
- 김현희·강문수·나채준,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를 위한 입법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 길용원, 「가산세의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와 그 증명책임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5호, 한국조세연구소, 2014a, pp. 3~52.

- _____, 「증가산세제도의 부정행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b, pp. 319~355.
- 류지민, 「조세 개념의 한계에 대한 소고- 미국 연방대법원 NFIB v. Sebelius의 조세·금전별 구별 쟁점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세법학회, 2017, pp. 7~61.
- 박영기, 『관세형사법』, 세창출판사, 2020.
- 서정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협력의무 관련 가산세제도의 개선방안」, 『조세연구』, 제17권 제4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pp. 95~122.
- 양인준, 「가산세에 있어서 부정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조세법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세법학회, 2015, pp. 9~67.
- 윤남현, 「관세법상 가산세 제도에 대한 소고: 관세법 제42조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중심으로」, 『계간관세사』, 통권 제176호, 한국관세사회, 2015, pp. 33~43.
- 윤동호, 「행정제재와 형사제재 병과의 이론과 현실」,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006, pp. 183~210.
- 이수진, 『통관제도 및 행정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5.
- 정재호·김수영·김미영·양지영, 『관세채권확보와 수입자 보호제도에 관한 검토』, 한국조세 연구원, 2012.
- 정지선·최천규, 「가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19권 제1집, 한국세법학회, 2013, pp. 137~176.
- 정진오, 「세법상 가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조세법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세법 학회, 2011, pp. 230~264.
- 천성권, 「미국의 증가산세 제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통권 제45호, 한양법학회, 2014, pp. 175~196.
- 관세청, 『성실납세 도움 전집 제1권 AEO·세액정산 가이드북』, 2020.
- 한상국·구자은·황진영, 『주요국의 가산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2006.
- 한국관세학회, 『기업의 심사부담 완화를 위한 납부세액 정산제도 등 도입방안 연구』, 관세청, 2008.

- 홍재성, 송진구, 「관세법상 사후세액 심사에서의 가산세에 대한 고찰: 한일 가산세제도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제19권 제4호, 2018, 12, pp. 51~69.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21.

- A Customs and Boarder Protection Service, *Documentary Import Declaration Comprehensive Guide*, 2013.
- Australian Border Force, “Understanding the Customs Act Infringement Notice Scheme.”
- Australian Customs Service, “Amending Import Declarations-Nature 10,” Industry Imports Manual V1.0, 2007. 2.
- _____, “Payment,” Industry Imports Manual V1.2, 2007. 2.
- Christophe Waerzeggers, Cory Hillier and Irving Aw, *Designing interest and tax penalty regimes*, Tax law IMF technical note volume 2019(1), IMF Legal Department, 2019. 1
-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Voluntary disclosure under Section 243T and 243U Customs Act 1901,”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Notice No.2016/25, 2016.
- US CBP, *What every member of the trade community should know about: Customs administrative enforcement process: Fines, Penalties, Forfeitures and Liquidated Damages*, 2004.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874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7. 12. 선고 2016누56556 판결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4. 3. 25. 2001헌바89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4헌바26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가7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가13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355 전원재판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https://custra.com/bbs/boardView.do?bbsCode=B405&bbsNo=26323>, 검색일자: 2021. 8. 9.

『한국관세신문』, 「2020 수입세액 정산기업 발표. 담당 사무관 인터뷰」, 2020. 3. 11., <http://www.kc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2340>, 검색일자: 2021. 8. 3.

미국관보,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1/04/23/2021-08465/quarterly-irs-interest-rates-used-in-calculating-interest-on-overdue-accounts-and-refunds-on-customs>, 검색일자: 2021. 6. 17.

CBP, <https://www.cbp.gov/trade/programs-administration/entry-summary/protests>, 검색일자: 2021. 7. 30.

CBSA, <https://www.cbsa-asfc.gc.ca/trade-commerce/amps/menu-eng.html>, 검색일자: 2021. 7. 22.

관세연구 21-01
관세법상 가산세제도와 벌칙조항의
합리적인 운용방향

발행	2020년 9월 30일
저자	정재호 · 노영예 · 이재선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및 인쇄	디자인범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ISBN 979-11-6655-072-0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관세연구 21-01

관세법상 가산세제도와 벌칙조항의 합리적인 운용방향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 www.kipf.re.kr

